

제338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2월30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10.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
25.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문학진흥법안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3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한국수화언어법안(대안)
41.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89.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10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9.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1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35.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7. 한국국체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158.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5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19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8.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20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 勤勞者의날制定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5.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3.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8.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5.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8.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3.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6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6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6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6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8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8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8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8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3.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9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9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8.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299.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30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30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3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30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3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8.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31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31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31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31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3.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 32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 3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2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4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34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4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4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4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4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5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5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5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6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6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6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36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7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7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7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37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7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8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87.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88.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89.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90.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91.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9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7. 균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9.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0.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심사된 안건

- 1.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 설훈 · 이개호 · 조정식 · 김태년 · 도종환 · 진성준 · 정진후 · 임수경 · 박홍근 의원 발의) 29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 · 강기윤 · 여상규 · 박맹우 · 이에리사 · 유재중 · 김재경 · 김태흠 · 김을동 · 박덕흠 의원 발의) 29
- 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 설훈 · 이개호 · 조정식 · 김태년 · 도종환 · 진성준 · 정진후 · 임수경 · 박홍근 의원 발의) 29
-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김성곤 · 김종태 · 류지영 · 서용교 · 신상진 · 이종배 · 정성호 · 홍지만 · 황주홍 의원 발의) 29
- 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서상기 · 정병국 · 홍일표 · 김동완 · 배덕광 · 이군현 · 홍지만 · 이우현 · 김을동 · 심윤조 의원 발의) 29
- 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심상정 · 김제남 · 서기호 · 박원석 · 안민석 · 도종환 · 유은혜 · 유기홍 · 설훈 · 박남춘 · 박홍근 의원 발의) 29
- 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이만우 · 이한성 · 김세연 · 손인춘 · 윤명희 · 이에리사 · 강은희 · 주호영 · 홍지만 · 서상기 의원 발의) 29
-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이찬열 · 노영민 · 김태년 · 이상직 · 김성곤 · 조정식 · 전병헌 · 김윤덕 · 배재정 · 유기홍 · 설훈 · 김재경 · 이상민 · 이춘석 · 김우남 의원 발의) 29
- 9.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조원진 · 전순옥 · 윤관석 · 최규성 · 김태년 · 배재정 · 박홍근 · 추미애 · 김영록 · 설훈 · 이원욱 · 도종환 · 황인자 · 함진규 · 박완주 · 홍철호 · 윤후덕 · 강석호 · 강창일 · 이개호 · 이운룡 · 김한표 · 유의동 의원 발의) 29
- 10.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광진 · 박원석 · 서영교 · 신경민 · 이개호 · 임수경 · 정갑윤 · 정진후 · 황주홍 의원 발의) 29
-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 · 이한성 · 박인숙 · 서상기 · 정우택 · 민병주 · 서용교 · 김세연 · 이재영 · 김종태 의원 발의) 29
-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유승우 · 최봉홍 · 황영철 · 이한성 · 김태원 · 조해진 · 김상민 · 이진복 · 박대출 · 서용교 · 안중범 의원 발의) 29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안규백 · 신학용 · 엄동열 · 박윤옥 · 장하나 · 조정식 · 오제세 · 임수경 · 이목희 · 김승남 · 이상직 · 안민석 · 김성곤 · 원혜영 · 유승민 · 정진후 · 김광진 · 문병호 · 박남춘 · 한선교 · 백재현 의원 발의) 29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정진후 · 조정식 · 설훈 · 배재정 · 이목희 · 유기홍 · 박주선 · 인재근 · 도종환 · 이인영 · 김현미 · 안민석 의원 발의) 29
1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도종환 · 박주선 · 박홍근 · 배재정 · 유기홍 · 유은혜 · 윤관석 · 조정식 · 정진후 의원 발의) 29
1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부좌현 · 이원욱 · 강기정 · 김영록 · 김광진 · 강창일 · 남인순 · 임수경 · 박수현 의원 발의) 30
17.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도종환 · 박주선 · 박홍근 · 배재정 · 유기홍 · 유은혜 · 윤관석 · 조정식 · 정진후 의원 발의) 30
1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박수현 · 부좌현 · 이찬열 · 이개호 · 양승조 · 원혜영 · 조정식 · 임수경 · 은수미 의원 발의) 30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 · 장윤석 · 경대수 · 주영순 · 서용교 · 이종훈 · 김희선 · 박창식 · 김도읍 · 김재경 · 홍문표 · 박덕흠 · 이인제 · 민현주 · 김상훈 의원 발의) 30
2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윤호중 · 배기운 · 이상직 · 진성준 · 안규백 · 김경협 · 배재정 · 김윤덕 · 오영식 의원 발의) 30
2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김윤덕 · 김현 · 도종환 · 박홍근 · 백재현 · 유기홍 · 이개호 · 이상직 · 전해철 · 정성호 · 정진후 · 조정식 의원 발의) 30
2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이한성 · 김세연 · 장윤석 · 유승민 · 김성태 · 이재영 · 주영순 · 황인자 · 이완영 · 이종배 · 류지영 · 길정우 · 한선교 의원 발의) 30
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이학영 · 배재정 · 김태년 · 안민석 · 박주선 · 박혜자 · 김상희 · 정진후 · 김현미 · 유기홍 · 유은혜 의원 발의) 30
24.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 · 김명연 · 김세연 · 신성범 · 윤재옥 · 이상일 · 정두언 · 이재영 · 이이재 · 민현주 · 김상민 · 이한성 의원 발의) 30
25.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 · 장윤석 · 심재철 · 배덕광 · 한선교 · 송영근 · 나성린 · 엄동열 · 이노근 · 정문헌 의원 발의) 30
26. 문학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홍종학 · 부좌현 · 임수경 · 박주선 · 장하나 · 조정식 · 김상희 · 윤호중 · 유은혜 · 김현 · 유인태 · 백재현 · 김성주 · 김광진 · 박광은 · 이목희 · 김현미 · 설훈 · 김용익 · 노영민 · 은수미 · 유대운 · 이학영 · 이춘석 · 신계륜 · 한정애 · 유성엽 · 김영록 · 이미경 · 김성곤 · 정세균 · 이개호 · 김종태 · 최민희 · 김관영 · 정진후 · 우원식 · 김우남 · 박영선 · 김기준 · 배재정 · 김경협 · 전해철 · 서영교 · 김민기 · 박혜자 · 신기남 · 유기홍 · 안민석 · 전정희 · 윤관석 · 진성준 · 오제세 · 최동익 · 신경민 · 정청래 · 김태년 · 김희선 · 박창식 · 이상일 · 이재오 의원 발의) 30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박주선 · 도종환 · 유기홍 · 배재정 · 정진후 · 김현미 · 윤관석 · 신경민 · 인재근 · 김상희 · 이목희 의원 발의) 30
2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윤관석 · 박지원 · 우상호 · 박혜자 · 임수경 · 홍의락 · 윤후덕 · 은수미 · 진선미 · 김현미 · 김기식 · 한명숙 · 전해철 · 이목희 · 김현 · 도종환 · 배재정 · 유승희 · 노영민 · 윤호중 · 최원식 · 진성준 · 유기홍 · 추미애 · 이용섭 · 김윤덕 · 이상직 · 배기운 · 백재현 · 김상희 · 이인영 · 최민희 · 정세균 · 김용익 · 오영식 · 박수현 · 김성주 · 홍종학 · 최재성 · 박홍근 · 정진후 · 박영선 · 박완주 · 인재근 · 유성엽 · 이석현 · 남인

순 · 설훈 · 김재윤 · 전병현 · 이춘석 · 강창일 의원 발의)	30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김학용 · 김희선 · 박인숙 · 서용교 · 신경립 · 신성범 · 신학용 · 윤재욱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종훈 · 김세연 의원 발의)	30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0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0
3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3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3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3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3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40. 한국수화언어법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41.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4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4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31
47.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4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49.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 · 박덕흠 · 최봉홍 · 이강후 · 정수성 · 이종진 · 여상규 · 이진복 · 길정우 · 심학봉 의원 발의)	40
5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 · 이개호 · 김우남 · 강창일 · 신경민 · 부좌현 · 박남춘 · 이춘석 · 이종배 · 양승조 의원 발의)	40
5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제출)	40
5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제출)	40
5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제출)	40
5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56.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57.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 · 이종배 · 이한성 · 류지영 · 유승민 · 정병국 · 송영근 · 박맹우 · 이재영 · 길정우 의원 발의)	40
5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황주홍 · 이개호 · 강창일 · 박남춘 · 김성곤 · 민홍철 · 박민수 · 노영민 · 김윤덕 의원 발의)	40
5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부좌현 · 진성준 · 이개호 · 김성곤 · 박민수 · 정청래 · 정성호 · 이상직 · 강동원 의원 발의)	40
60.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 · 한선교 · 김태원 · 권은희 · 강기윤 · 이한성 · 윤상현 · 김광립 · 정병국 · 송영근 의원 발의)	40
6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 · 류지영 · 황주홍 · 박명재 · 안홍준 · 강기윤 · 이한성 · 김광립 · 정병국 · 송영근 의원 발의)	41
6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 · 김재원 · 황주홍 · 이한성 · 김광	

림 · 박맹우 · 주호영 · 정갑윤 · 이명수 · 황진하 · 서청원 · 이철우 의원 발의)	41
63.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 · 박민식 · 류지영 · 이한성 · 김중태 · 신경림 · 김광림 · 주영순 · 정미경 · 길정우 의원 발의)	41
64.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6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6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6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6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6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7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7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7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박홍근 · 최규성 · 배재정 · 윤관석 · 김영록 · 최민희 · 추미애 · 조정식 · 심재권 · 신정훈 · 박원석 · 이원욱 의원 발의)	41
7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민홍철 · 박홍근 · 배재정 · 김기준 · 박남춘 · 박영선 · 황주홍 · 이목희 · 정청래 · 유기홍 · 김성곤 · 최동익 · 김상희 의원 발의)	41
74.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박상은 · 김진태 · 신경림 · 주승용 · 이재영 · 강기운 · 김희국 · 정희수 · 안홍준 의원 발의)	41
7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 · 이한성 · 윤명희 · 박명재 · 조명철 · 이완영 · 박인숙 · 김중태 · 이에리사 · 박윤옥 · 이자스민 · 윤재옥 의원 발의)	41
7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77.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7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조정식 · 이윤석 · 최민희 · 신장용 · 배기운 · 최원식 · 이인영 · 도종환 · 주승용 · 이해찬 · 전순옥 · 이한성 · 전해철 · 강창일 · 윤관석 · 남인순 · 안홍준 의원 발의)	47
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47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47
17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48
17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배덕광 · 류지영 · 이자스민 · 문대성 · 최봉홍 · 윤영석 · 이상일 · 김도읍 · 김제식 의원 발의)	48
17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조정식 · 변재일 · 송호창 · 김관영 · 전정희 · 김상희 · 배재정 · 윤후덕 · 한정애 · 박광은 의원 발의)	49
17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이상직 · 민홍철 · 이개호 · 김성곤 · 김기준 · 부좌현 · 임수경 · 박남춘 · 김상희 · 김광진 · 송호창 · 이목희 의원 발의)	49
17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안규백 · 김태년 · 김춘진 · 이찬열 · 김상희 · 이미경 · 설훈 · 원혜영 · 이원욱 · 심재권 · 이석현 의원 발의)	49
17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인재근 · 정청래 · 조정식 · 이개호 · 박홍근 · 김상희 · 장하나 · 이목희 · 김영주 · 우상호 · 안규백 의원 발의)	49
1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이미경 · 유은혜 · 김기식 · 이인영 · 민	

병두·이춘석·노웅래·정호준·김성주·최민희·박남춘·전해철·우상호 의원 발의) 49

17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7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7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8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8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8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8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8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8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8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18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19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19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19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19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49

1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49

19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백재현·변재일·박홍근·황주홍·김광진·신경민·김태년·조정식 의원 발의) 49

19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49

19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49

19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기준·백군기·심재권·최민희·權垠希·안민석·박수현·최원식·김태년·윤호중·은수미·진선미·김기식·이학영 의원 발의) 49

19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정희수·류지영·인재근·박맹우·심학봉·권성동·양창영·김기선·김제식 의원 발의) 49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윤관석·배기운·김성곤·이학영·주승용·전순옥·민홍철·이상직·이상민·유성엽 의원 발의) 50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이완영·김상훈·김기선·김한표·강기운·김희선·박명재·이이재·송영근 의원 발의) 50

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50

20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0

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0

20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0
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0
20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0
208.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0
20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0
210.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0
2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최원식 · 은수미 · 진성준 · 김용익 · 김진표 · 원혜영 · 한정애 · 추미애 · 배기운 · 이찬열 · 장하나 · 최민희 · 한명숙 · 진선미 · 임수 경 · 전순옥 · 김재운 · 박남춘 · 안규백 · 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50
2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박병석 · 김기준 · 박민수 · 강기정 · 이 원욱 · 정세균 · 홍익표 · 은수미 · 김성주 · 이미경 · 임수경 · 박주선 · 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50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53
17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 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53
17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배덕광 · 류지영 · 이자스민 · 문대 성 · 최봉홍 · 윤영석 · 이상일 · 김도읍 · 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53
17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조정식 · 변재일 · 송호창 · 김관영 · 전정희 · 김상희 · 배재정 · 윤후덕 · 한정애 · 박광은 의원 발의)(계속)	53
17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이상직 · 민홍철 · 이개호 · 김성곤 · 김기준 · 부좌현 · 임수경 · 박남춘 · 김상희 · 김광진 · 송호창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53
17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안규백 · 김태년 · 김춘진 · 이찬 열 · 김상희 · 이미경 · 설훈 · 원혜영 · 이원욱 · 심재권 · 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53
17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 영 · 인재근 · 정청래 · 조정식 · 이개호 · 박홍근 · 김상희 · 장하나 · 이목희 · 김영주 · 이상호 · 안 규백 의원 발의)(계속)	53
1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이미경 · 유은혜 · 김기식 · 이인영 · 민병 두 · 이춘석 · 노웅래 · 정호준 · 김성주 · 최민희 · 박남춘 · 전해철 · 이상호 의원 발의)(계속)	53
17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3
17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3
17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3
18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3
18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3
18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3
18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3
1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4
18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4
18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4
18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4
1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4
18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4
19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4
19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4
192.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4

- 19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54
- 1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54
- 19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윤덕 · 백재현 · 변재일 · 박홍근 · 황주홍 · 김광진 · 신경민 · 김태년 · 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54
- 19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54
- 19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54
- 19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김기준 · 백균기 · 심재권 · 최민희 · 權根希 · 안민석 · 박수현 · 최원식 · 김태년 · 윤호중 · 은수미 · 진선미 · 김기식 · 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54
- 19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 정희수 · 류지영 · 인재근 · 박맹우 · 심학봉 · 권성동 · 양창영 · 김기선 · 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54
-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윤관석 · 배기운 · 김성곤 · 이학영 · 주승용 · 전순옥 · 민홍철 · 이상직 · 이상민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54
-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이완영 · 김상훈 · 김기선 · 김한표 · 강기운 · 김희선 · 박명재 · 이이재 · 송영근 의원 발의)(계속) 54
- 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54
- 20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4
- 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4
- 20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4
- 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4
- 20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54
- 208.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4
- 20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4
- 210.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4
- 2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최원식 · 은수미 · 진성준 · 김용익 · 김진표 · 원혜영 · 한정애 · 추미애 · 배기운 · 이찬열 · 장하나 · 최민희 · 한명숙 · 진선미 · 임수경 · 전순옥 · 김재운 · 박남춘 · 안규백 · 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55
- 2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박병석 · 김기준 · 박민수 · 강기정 · 이원욱 · 정세균 · 홍익표 · 은수미 · 김성주 · 이미경 · 임수경 · 박주선 · 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55
- 1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 · 김명연 · 류지영 · 이재영 · 이정현 · 박명재 · 양창영 · 민현주 · 문정림 · 유재중 의원 발의) 57
- 1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장하나 · 조정식 · 김성곤 · 정진후 · 서기호 · 안규백 · 추미애 · 서영교 · 이원욱 · 임수경 · 박홍근 · 이목희 의원 발의) 57

1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57
1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57
12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강기윤·정문헌·이명수·황영철·송영근·염동열·김상민·권성동·이노근·이한성 의원 발의) 57
129.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신경림·안홍준·박윤옥·정성호·이명수·김명연·박성호·길정우·김정록·이현재 의원 발의) 57
1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박대출·김태흠·홍지만·김태환·염동열·이완영·김제식·문정림·송영근·이재영·이종훈·전하진·김학용·이명수·황인자·박윤옥·이종진·김정록·박인숙 의원 발의) 57
1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57
13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손인춘·윤명희·박명재·이상일·송영근·서정원·김종태·이철우·박창식·조명철·홍철호 의원 발의) 57
13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57
13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황인자·최봉홍·김태환·이한성·심학봉·송영근·조명철·김상훈·박대동 의원 발의) 57
135.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김기선·이명수·이만우·전하진·양창영·김명연·박윤옥·홍문중·주호영 의원 발의) 57
13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정청래·오영식·이상직·김성곤·부좌현·박남춘·홍문표·김춘진·유성엽 의원 발의) 57
13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13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1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14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14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14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4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4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4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4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5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5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5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5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58.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58
15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김제식·이종배·김성찬·강기윤·김정록·유재중·정용기·윤재옥·이명수·문정림·이종진 의원 발의)	58
16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6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6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6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6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6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6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8
16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58
23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9
2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9
238.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황주홍·이개호·박민수·조정식·김광진·김상희·강창일·신정훈·박남춘·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69
23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부좌현·박남춘·김광진·김우남·김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계속)	69
24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이이재·정갑윤·이채익·박창식·강석호·길정우·이만우·정용기·장윤석 의원 발의)(계속)	69
2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오영식·이찬열·김춘진·윤관석·배재정·이원욱·부좌현·민홍철·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70
24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오영식·이찬열·김춘진·윤관석·배재정·이원욱·부좌현·이춘석·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70
24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철우·문대성·신의진·이재영·김희선·김제식·김진태·권성동·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70
24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245.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부좌현·박남춘·김광진·김우남·김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계속)	70
24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이개호·김우남·신경민·배재정·조정식·김경협·김윤덕·안규백·오영식 의원 발의)(계속)	70
24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70
248.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70
24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주승용·김영록·최규성·부좌현·홍문표·강동원·김춘진·강기정·김종태 의원 발의)(계속)	70
25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배기운·윤관석·박원석·정진후·심상정·김제남·장하나·김재연·황주홍·진성준·정성호·김기식·최원	

식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70
25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33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강석훈 · 이채익 · 이우현 · 류지영 · 이병석 · 전해철 · 노철래 · 송영근 · 김진태 의원 발의)	71
2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 · 백재현 · 김윤덕 · 이원욱 · 전정희 · 안규백 · 조정식 · 이개호 · 홍영표 · 박완주 · 진성준 · 배재정 의원 발의)	72
2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박주선 · 이개호 · 부좌현 · 노웅래 · 조정식 · 이찬열 · 김태원 · 김광진 · 김우남 의원 발의)	72
2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부좌현 · 이개호 · 황주홍 · 안규백 · 정성호 · 김성곤 · 강동원 · 유승희 · 최동익 · 노웅래 · 정청래 · 박남춘 · 박민수 의원 발의)	72
2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부좌현 · 오영식 · 주승용 · 이원욱 · 최규성 · 윤후덕 · 인재근 · 홍영표 · 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11)	72
2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權垠希 의원 대표발의)(權垠希 · 이목희 · 안규백 · 황주홍 · 박남춘 · 전해철 · 백재현 · 김성곤 · 신경민 · 오제세 의원 발의)	72
2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주승용 · 부좌현 · 이원욱 · 최규성 · 오영식 · 윤후덕 · 최민희 · 인재근 · 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51)	72
2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박민식 · 이운룡 · 김광진 · 류지영 · 김진태 · 김희선 · 송영근 · 이우현 · 서청원 의원 발의)	72
2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 · 박명재 · 정갑윤 · 홍지만 · 유재중 · 김태원 · 이인제 · 류지영 · 박윤옥 · 정문현 · 강석호 · 정희수 · 조명철 · 김성찬 의원 발의)	72
26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유승우 · 이완영 · 김상훈 · 이명수 · 송영근 · 김명연 · 김기선 · 이종진 · 김을동 의원 발의)	72
2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개호 · 김성곤 · 변재일 · 조정식 · 이윤석 · 최규성 · 강창일 · 진성준 · 김현 의원 발의)	72
2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홍익표 · 이개호 · 조정식 · 김광진 · 이목희 · 박남춘 · 김성곤 · 김정협 · 노영민 의원 발의)	72
263.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최동익 · 진성준 · 윤관석 · 최원식 · 부좌현 · 김민기 · 박남춘 · 황주홍 · 홍종학 · 김영록 · 백재현 · 우윤근 · 최민희 의원 발의)	72
26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 · 박남춘 · 신학용 · 신경민 · 이개호 · 안규백 · 유승희 · 權垠希 · 윤관석 · 박지원 · 김광진 · 이종걸 의원 발의)	73
26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 · 이춘석 · 서영교 · 윤후덕 · 백재현 · 유성엽 · 이찬열 · 박범계 · 유승희 · 민홍철 · 전해철 · 김기식 · 최민희 의원 발의)	73
26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 · 민병두 · 윤후덕 · 김민기 · 정호준 · 주승용 · 강기정 · 조정식 · 이개호 · 노웅래 · 이찬열 · 김용익 의원 발의)	73
26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박민식 · 정수성 · 경대수 · 김장실 · 박대동 · 이학재 · 강기윤 · 민병주 · 류지영 · 전하진 · 김희국 의원 발의)	73
2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임내현 · 부좌현 · 이춘석 · 김광진 · 김민기 · 박홍근 · 박민수 · 박남춘 · 김현 의원 발의)	73
2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주승용 · 부좌현 · 이원욱 · 최규성 · 오영식 · 윤후덕 · 최민희 · 인재근 · 김광진 의원 발의)	73

- 2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손인춘 · 전하진 · 노철래 · 이재영 · 박대출 · 하태경 · 이종진 · 최봉홍 · 안효대 · 정희수 의원 발의) 73
- 2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윤후덕 · 서영교 · 정호준 · 추미애 · 최원식 · 이연주 · 김용익 · 김광진 · 오영식 · 우원식 · 전해철 · 이춘석 · 박원석 · 이상직 · 진선미 · 박광운 · 權根希 · 안철수 · 유은혜 · 정성호 · 인재근 의원 발의) 73
- 2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 · 조명철 · 김성찬 · 이완영 · 홍지만 · 홍철호 · 류지영 · 김정록 · 박윤옥 · 김기선 · 박대동 · 이운룡 · 김상민 의원 발의) 73
- 2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3
- 2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김동완 · 정희수 · 나성린 · 이한성 · 박맹우 · 신상진 · 유재중 · 염동열 · 이만우 의원 발의) 73
- 2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박명재 · 이철우 · 이명수 · 서상기 · 황인자 · 박윤옥 · 양창영 · 송영근 · 이현재 의원 발의) 73
- 2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윤덕 · 강창일 · 박홍근 · 안민석 · 김광진 · 김우남 · 김동철 · 유성엽 · 김민기 · 노웅래 의원 발의) 73
- 27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 · 류지영 · 황영철 · 권성동 · 이노근 · 김태흠 · 김종태 · 안홍준 · 이강후 · 황인자 의원 발의) 73
- 27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이개호 · 김성곤 · 신경민 · 박홍근 · 이목희 · 강창일 · 전정희 · 최동익 · 안규백 의원 발의) 73
- 2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신의진 · 이한성 · 류지영 · 강기윤 · 조명철 · 홍지만 · 문정림 · 박윤옥 · 민현주 · 이명수 · 신경림 의원 발의) 73
- 2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김경협 · 윤관석 · 이상직 · 정세균 · 이석현 · 노영민 · 진성준 · 김기식 · 송호창 · 부좌현 · 한기호 · 이연주 의원 발의) 73
- 2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 · 이윤석 · 서영교 · 김경협 · 한정애 · 이상민 · 이강후 · 이연주 · 박덕흠 · 권성동 · 홍종학 · 임내현 · 김영주 의원 발의) 73
- 2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윤명희 · 이한성 · 이채익 · 강기윤 · 박대동 · 정갑윤 · 김태호 · 이만우 · 김동완 의원 발의) 73
- 28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이인영 · 진성준 · 윤관석 · 최규성 · 김승남 · 진선미 · 송호창 · 이개호 · 김현미 · 이목희 · 우원식 의원 발의) 74
- 28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김영록 · 김윤덕 · 민병두 · 신문식 · 이개호 · 전정희 · 주승용 · 최규성 · 이상직 의원 발의) 74
- 28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박남춘 · 김민기 · 진선미 · 최민희 · 박지원 · 홍종학 · 김용익 · 김현 · 윤후덕 · 부좌현 · 설훈 의원 발의) 74
- 28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만우 · 김명연 · 정미경 · 홍문종 · 유의동 · 전하진 · 장정은 · 홍지만 · 이운룡 의원 발의) 74
- 28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이인영 · 진성준 · 윤관석 · 최규성 · 김승남 · 진선미 · 송호창 · 이개호 · 김현미 · 이목희 · 우원식 의원 발의) 74
- 28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 · 이철우 · 경대수 · 여상규 · 신성범 · 양창영 · 권성동 · 류지영 · 김용태 · 유승민 · 이한성 의원 발의) 74
- 2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조정식 · 이개호 · 주승용 · 김동철 · 임내현 · 송호창 · 이종걸 · 김관영 · 강기정 의원 발의) 74

2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 · 김영록 · 김민기 · 주승용 · 조정식 · 이개호 · 강기정 · 김광진 · 민병두 · 황주홍 · 이상직 의원 발의) 74
2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부좌현 · 황주홍 · 최재성 · 이개호 · 노웅래 · 오영식 · 김광진 · 정세균 · 박홍근 · 우윤근 의원 발의) 74
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김경협 · 윤관석 · 정세균 · 이석현 · 노영민 · 진성준 · 백재현 · 송호창 · 부좌현 의원 발의) 74
293.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이종진 · 신경림 · 이명수 · 신의진 · 김명연 · 김재원 · 김제식 · 김장실 · 권성동 · 강기윤 의원 발의) 74
29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노웅래 · 부좌현 · 서영교 · 유승우 · 주승용 · 최봉홍 · 홍문표 · 홍지만 · 황주홍 의원 발의) 74
29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백재현 · 박광온 · 서영교 · 이원욱 · 오영식 · 김성곤 · 안규백 · 전해철 · 이춘석 의원 발의) 74
29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4
29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정미경 · 송영근 · 이만우 · 손인춘 · 조정태 · 홍철호 · 이완영 · 박성호 · 류지영 · 주영순 · 신경림 · 정병국 · 유승우 · 강석호 의원 발의) 74
298.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74
299.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 · 박홍근 · 부좌현 · 안규백 · 이목희 · 전해철 · 윤후덕 · 조정식 · 전순옥 · 김상희 · 김성곤 · 김광진 의원 발의) 75
30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조정태 · 안규백 · 민홍철 · 박홍근 · 최동익 · 김성곤 · 부좌현 · 이개호 · 강창일 의원 발의) 75
30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이개호 · 조정식 · 박홍근 · 백군기 · 부좌현 · 강동원 · 유승희 · 양승조 · 정세균 의원 발의) 75
3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광진 · 김우남 · 박홍근 · 부좌현 · 서영교 · 송호창 · 이원욱 · 주승용 · 황주홍 의원 발의) 75
30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 · 강기정 · 김기준 · 김영환 · 김현미 · 남인순 · 오영식 · 우원식 · 유은혜 · 윤후덕 · 이개호 · 이학영 · 전순옥 의원 발의) 75
3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이재영 · 김진태 · 황인자 · 권성동 · 홍일표 · 김희선 · 김제식 · 이철우 · 장윤석 의원 발의) 75
30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 · 류지영 · 이한성 · 황영철 · 권성동 · 이노근 · 김태흠 · 김종태 · 안홍준 · 조명철 의원 발의) 75
30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 대표발의)(조정태 · 오신환 · 주승용 · 장윤석 · 박주선 · 이채익 · 정희수 · 정미경 · 유승희 · 황주홍 의원 발의) 75
30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5
308.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이장우 · 심재철 · 김현숙 · 김용태 · 류지영 · 정미경 · 이만우 · 윤명희 · 하태경 · 문대성 · 이재영 · 박덕흠 · 손인춘 · 전하진 · 이노근 · 정갑윤 · 양창영 · 김기선 · 서청원 · 염동열 · 김상훈 · 심학봉 · 김종훈 · 홍철호 · 최봉홍 · 강석호 의원 발의) 75
3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이병석 · 노철래 · 유의동 · 황인자 · 이우현 · 김도읍 · 송영근 · 강석훈 · 심재철 의원 발의) 75
3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 · 안규백 · 손인춘 · 윤후덕 · 부좌현 · 김광진 · 김태흠 · 송영근 · 강길부 · 이찬열 · 김성찬 의원 발의) 75

3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 · 김성곤 · 김우남 · 김윤덕 · 박지원 · 박혜자 · 신계륜 · 유인태 · 윤관석 · 이개호 · 이윤석 · 이원욱 · 이한성 · 장병완 · 전해철 · 정청래 · 정호준 · 조정태 · 조정식 의원 발의)	75
3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부좌현 · 강기정 · 배재정 · 박남춘 · 김민기 · 장하나 · 최규성 · 김영록 · 이원욱 의원 발의)	75
31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김동철 · 김성곤 · 남인순 · 박민수 · 박원석 · 이개호 · 이원욱 · 이자스민 · 이찬열 · 홍일표 의원 발의)	75
31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서청원 · 이현재 · 류지영 · 황우여 · 박원석 · 길정우 · 원혜영 · 주호영 · 윤재옥 · 송영근 · 안상수 · 한선교 의원 발의)	75
31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 인재근 · 정희수 · 이한성 · 김태원 · 박원석 · 강길부 · 원혜영 · 박인숙 · 김상훈 의원 발의)	76
31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서영교 · 김현 · 이개호 · 장병완 · 정청래 · 김민기 · 박홍근 · 김태년 · 최규성 · 신기남 · 임내현 · 김윤덕 · 김우남 의원 발의)	76
31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이개호 · 유기홍 · 박민수 · 정호준 · 이상호 · 홍의락 · 최민희 · 최원식 · 백재현 의원 발의)	76
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76
3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정청래 · 이개호 · 김기준 · 박남춘 · 황주홍 · 김성곤 · 정호준 · 이해찬 · 안규백 의원 발의)	76
3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 · 박남춘 · 이개호 · 조정식 · 신경민 · 황주홍 · 이춘석 · 윤관석 · 정성호 · 이상민 의원 발의)	76
3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 · 박원석 · 이개호 · 정진후 · 심상정 · 김제남 · 홍영표 · 신경민 · 서영교 · 최동익 의원 발의)	76
3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 · 이학영 · 정성호 · 서영교 · 전해철 · 박범계 · 민병두 · 남인순 · 조정식 · 임내현 의원 발의)	76
323.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정청래 · 이춘석 · 서영교 · 안규백 · 신정훈 · 전해철 · 이원욱 · 김성곤 · 박광온 의원 발의)	76
32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 · 안철수 · 서영교 · 부좌현 · 이찬열 · 황주홍 · 김정협 · 윤후덕 · 이상직 · 박주선 의원 발의)	76
3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 · 박지원 · 이개호 · 홍종학 · 이미경 · 김성곤 · 김동철 · 강기정 · 장병완 · 박혜자 의원 발의)	76
3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 · 이학영 · 백군기 · 김성곤 · 서영교 · 전해철 · 최원식 · 박범계 · 민병두 · 남인순 의원 발의)	76
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이인영 · 진성준 · 윤관석 · 최규성 · 김승남 · 진선미 · 송호창 · 이개호 · 김현미 · 이목희 · 우원식 의원 발의)	76
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안규백 · 서영교 · 설훈 · 부좌현 · 이춘석 · 신정훈 · 이원욱 · 김성곤 · 노영민 · 정청래 · 전해철 · 홍일표 의원 발의)	76
32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서영교 · 김현 · 이개호 · 장병완 · 정청래 · 김민기 · 박홍근 · 김태년 · 최규성 · 신기남 · 김윤덕 · 김우남 의원 발의)	76
33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백재현 · 박광온 · 서영교 · 이원욱 · 오영식 · 김성곤 · 안규백 · 전해철 · 이춘석 의원 발의)	76
33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서영교 · 김현 · 이개호 · 장병완 · 정청래 · 김민기 · 박홍근 · 김태년 · 최규성 · 신기남 · 임내현 · 김윤덕 · 김우남 의원 발의)	76

33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6
3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현승 · 김상민 · 박창식 · 염동열 · 이우현 · 김태원 · 서용교 · 윤상현 · 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91) 76
3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언주 · 이춘석 · 김현미 · 안규백 · 윤후덕 · 변재일 · 박광온 · 김관영 · 김경협 의원 발의) 76
3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하태경 · 김광림 · 이학재 · 주영순 · 이현승 · 이우현 · 이노근 · 박성호 · 강동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81) 76
3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김제식 · 김기선 · 이강후 · 김성찬 · 박맹우 · 신경림 · 민현주 · 이에리사 · 이종배 · 박윤옥 · 이명수 · 김명연 의원 발의) 77
3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창식 · 이노근 · 염동열 · 강은희 · 이채익 · 이강후 · 김제식 · 유의동 · 경대수 의원 발의) 77
33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김성곤 · 김춘진 · 박범계 · 송호창 · 신정훈 · 이개호 · 주승용 · 최규성 · 황주홍 의원 발의) 77
34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정미경 · 이한성 · 심재철 · 조명철 · 유승민 · 홍철호 · 신의진 · 김태원 · 정병국 · 손인춘 의원 발의) 77
34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재영 · 이노근 · 이이재 · 김제식 · 류지영 · 윤명희 · 이장우 · 김태원 · 이완영 의원 발의) 77
34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7
34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박민수 · 인재근 · 정청래 · 이개호 · 김성곤 · 이미경 · 전정희 · 윤후덕 · 박남춘 의원 발의) 77
34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한기호 · 문정림 · 강기윤 · 윤후덕 · 안규백 · 송영근 · 김태원 · 조명철 · 이강후 의원 발의) 77
3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재영 · 홍철호 · 이이재 · 이상일 · 김제식 · 류지영 · 윤명희 · 염동열 · 강은희 의원 발의) 77
3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부좌현 · 오영식 · 주승용 · 이원욱 · 최규성 · 윤후덕 · 인재근 · 홍영표 · 박주선 의원 발의) 77
34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정청래 · 신경민 · 이목희 · 이개호 · 김성곤 · 배재정 · 정호준 · 부좌현 · 박남춘 의원 발의) 77
34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안규백 · 서영교 · 설훈 · 부좌현 · 이춘석 · 신정훈 · 이원욱 · 김성곤 · 노영민 · 정청래 · 전해철 · 홍일표 의원 발의) 77
34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 · 서용교 · 김진태 · 전하진 · 홍일표 · 강석훈 · 김을동 · 이자스민 · 이종훈 · 권성동 의원 발의) 77
3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7
35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77
35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이개호 · 신경민 · 강창일 · 이원욱 · 노영민 · 정청래 · 전해철 · 황주홍 · 김기준 의원 발의) 77
3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이종진 · 신경림 · 이명수 · 김명연 · 김재원 · 김제식 · 김장실 · 김정록 · 권성동 의원 발의) 77
35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부좌현 · 오영식 · 주승용 · 이원욱 · 최규성 · 윤후덕 · 인재근 · 홍영표 · 박주선 의원 발의) 77
3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윤후덕 · 서영교 · 정호준 · 추미애 · 최원

- 식 · 이연주 · 김용익 · 김광진 · 오영식 · 우원식 · 전해철 · 이춘석 · 박원석 · 이상직 · 진선미 · 박광운 · 權根希 · 안철수 · 유은혜 · 정성호 · 인재근 의원 발의) 77
35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이석현 · 문재인 · 홍영표 · 김명연 · 전해철 · 박지원 · 정진후 · 신기남 · 한정애 의원 발의) 77
35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 · 주영순 · 이한구 · 박맹우 · 윤명희 · 김기선 · 정병국 · 강기윤 · 김태환 · 박상은 · 이종배 · 김영우 · 류지영 의원 발의) 77
3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원혜영 · 이개호 · 이원욱 · 전정희 · 박남춘 · 김광진 · 노영민 · 윤후덕 · 전병헌 의원 발의) 77
35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8
36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이원욱 · 오영식 · 부좌현 · 김춘진 · 유성엽 · 신정훈 · 이찬열 · 정호준 · 임내현 · 배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01) 78
36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이원욱 · 오영식 · 부좌현 · 김춘진 · 변재일 · 윤관석 · 이찬열 · 황주홍 · 배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92) 78
3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 · 노영민 · 진성준 · 김윤덕 · 이원욱 · 전순옥 · 조정식 · 김현미 · 윤관석 · 배재정 의원 발의) 78
363.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주승용 · 유승희 · 백재현 · 조정식 · 양승조 · 신경민 · 김민기 · 김승남 · 황주홍 의원 발의) 78
3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8
3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 · 유승우 · 신경림 · 이한성 · 홍일표 · 정용기 · 함진규 · 여상규 · 박민식 · 강길부 · 정병국 의원 발의) 78
36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 · 강기정 · 김기준 · 박홍근 · 서기호 · 서영교 · 신경민 · 우원식 · 이개호 · 전해철 의원 발의) 78
36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 · 이한성 · 이석현 · 홍일표 · 권성동 · 나성린 · 주호영 · 나경원 · 길정우 · 김희선 · 박대동 의원 발의) 78
36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서영교 · 김현 · 이개호 · 장병완 · 정청래 · 김민기 · 박홍근 · 김태년 · 최규성 · 신기남 · 임내현 · 김윤덕 · 김우남 의원 발의) 78
36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진선미 · 최동익 · 강동원 · 이목희 · 우원식 · 이인영 · 송호창 · 김승남 · 최규성 · 윤관석 의원 발의) 78
37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 · 하태경 · 홍철호 · 정성호 · 정갑윤 · 정문헌 · 나성린 · 신의진 · 김태원 · 권성동 의원 발의) 78
37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 · 하태경 · 홍철호 · 정성호 · 정갑윤 · 정문헌 · 김태원 · 나성린 · 신의진 · 권성동 의원 발의) 78
37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이개호 · 김성곤 · 이미경 · 전정희 · 윤후덕 · 박남춘 · 최원식 · 박민수 · 인재근 의원 발의) 78
37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안규백 · 서영교 · 설훈 · 부좌현 · 이춘석 · 신정훈 · 이원욱 · 김성곤 · 노영민 의원 발의) 78
37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 · 홍문표 · 박주선 · 이개호 · 정세균 · 정청래 · 이원욱 · 박홍근 · 윤관석 · 이한성 · 홍일표 · 안민석 · 김윤덕 의원 발의) 78
37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강석호 · 김태원 · 김희국 · 박덕흠 · 신상진 · 이노근 · 이현승 · 함진규 · 이우현 의원 발의) 78
3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 · 이개호 · 유승희 · 전병헌 · 박영선 · 조정식 · 전정희 · 민홍철 · 강동원 · 김성곤 · 이목희 · 송호창 의원 발의) 78

3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부좌현 · 오영식 · 주승용 · 이원욱 · 최규성 · 윤후덕 · 인재근 · 홍영표 · 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10) 78
3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78
3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민병두 · 김영록 · 신정훈 · 이종걸 · 박광온 · 강동원 · 이학영 · 안민석 · 김현미 · 정호준 의원 발의) 78
3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권성동 · 나성린 · 박대출 · 안홍준 · 노철래 · 김태원 · 김재경 · 정희수 · 신성범 · 최봉홍 · 황인자 의원 발의) 79
3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연주 · 유승희 · 이개호 · 이윤석 · 신기남 · 김광진 · 박수현 · 김동철 · 김영록 · 김상희 의원 발의) 79
3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박윤옥 · 이종진 · 윤명희 · 김명연 · 정희수 · 김기선 · 장정은 · 김제식 의원 발의) 79
3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부좌현 · 윤후덕 · 주승용 · 이원욱 · 최규성 · 오영식 · 인재근 · 강기정 · 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99) 79
3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강기정 · 김영환 · 김기식 · 신학용 · 김기준 · 이상직 · 인재근 · 신경민 · 김관영 의원 발의) 79
3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 · 강기정 · 김영환 · 김기준 · 이개호 · 오영식 · 윤후덕 · 전순옥 · 김현미 · 우원식 · 이학영 · 남인순 · 유은혜 의원 발의) 79
38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9
387.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 · 유대운 · 안규백 · 윤후덕 · 부좌현 · 김태흠 · 강길부 · 이찬열 · 김광진 · 신경민 의원 발의) 79
388.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김기준 · 박주선 · 김승남 · 윤관석 · 변재일 · 이원욱 · 김영록 · 박광온 · 김춘진 의원 발의) 79
389.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송영근 · 정병국 · 류지영 · 정미경 · 한기호 · 최봉홍 · 정용기 · 손인춘 · 김종태 · 정갑윤 의원 발의) 79
390.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9
391.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9
39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9
39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연주 · 유인태 · 이춘석 · 김현미 · 안규백 · 윤후덕 · 변재일 · 임수경 · 박광온 · 김관영 · 우윤근 의원 발의) 79
39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 · 이노근 · 장윤석 · 이종진 · 서용교 · 이철우 · 이강후 · 이만우 · 홍지만 · 홍문중 의원 발의) 79
39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김윤덕 · 이개호 · 강창일 · 이찬열 · 이원욱 · 노영민 · 정청래 · 전해철 · 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419) 79
39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원혜영 · 정청래 · 이개호 · 전해철 · 정성호 · 이원욱 · 전정희 · 박남춘 · 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62) 79
397. 균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이학재 · 정문현 · 김도읍 · 김광림 · 이종배 · 박성호 · 안홍준 · 이만우 · 황인자 · 서상기 · 송영근 의원 발의) 79
3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이개호 · 황주홍 · 정청래 · 오제세 · 최원식 · 박범계 · 노웅래 · 김광진 · 유성엽 · 최동익 · 이상직 의원 발의) 79
399.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1
8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정청래 · 이개호 · 강창일 · 민홍철 · 우윤근 · 박홍근 · 김우남 · 전해철 · 김성곤 의원 발의) 89

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임내현·김우남·박홍근·이개호·김성곤·강기정·조정식·황주홍·김광진·박혜자·심재권·박남춘 의원 발의)	89
8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강석훈·송영근·장윤석·박명재·김윤덕·홍지만·신성범·강석호·류지영·유승우 의원 발의)	89
8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이철우·강석훈·이우현·이완영·김한표·정수성·이만우·김희국·한선교·전하진 의원 발의)	89
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선미·김승남·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	89
8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류지영·박민식·박명재·전하진·경대수·유재중·이채익·김동완·박성호·길정우·이재영 의원 발의)	89
89.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박영선·오제세·김광진·황주홍·정청래·인재근·김기준·전정희·민병두 의원 발의)	89
9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이현재·안홍준·김상훈·이진복·김한표·이정현·전하진·홍지만·정수성 의원 발의)	89
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89
9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89
9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89
9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89
9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89
9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89
97.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89
9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89
9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89
1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89
10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89
10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9
10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9
10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0
10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0
10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0
10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최봉홍·이현재·김태호·서용교·권성동·이노근·이진복·노철래·이종진·홍영표 의원 발의)	90
10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이강후·황인자·여상규·안홍준·정수성·홍지만·이채익·정문헌·길정우·김동철 의원 발의)	90
10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황주홍·이개호·민홍철·강동원·김윤덕·김우남·박남춘·이윤석·노영민 의원 발의)	90
1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우남·이낙연·배기운·김경협·이찬열·김동철·양승조·박주선·임수경 의원 발의)	90
1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박민수·이목희·전순옥·최원식·장하나·정성호·김승남·이상직·정진후·유은혜·배기운·박남춘·이에리사·김종태·송호창·황주홍·전정희 의원 발의)	90
1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0

1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0

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0

1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0

1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90

11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0

11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함진규 · 이만우 · 이현재 · 염동열 · 윤재옥 · 김상훈 · 이강후 · 전하진 · 강은희 · 김한표 · 길정우 · 홍지만 의원 발의) 90

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0

12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우윤근 · 주승용 · 최규성 · 이원욱 · 부좌현 · 오영식 · 박완주 · 김관영 · 이언주 · 한정애 · 윤후덕 의원 발의) 90

1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0

12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0

1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0

400.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김윤덕 · 윤관석 · 박홍근 · 최동익 · 김관영 · 이상직 · 박민수 · 이춘석 · 이학영 · 임수경 · 유성엽 · 최규성 · 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90

21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나성린 · 이만우 · 이한성 · 박명재 · 김광림 · 유일호 · 강석호 · 이현재 · 주영순 · 서용교 · 강길부 의원 발의) 99

2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99

23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99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를 개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그리고 장관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법안의 자구·체계 심사를 하고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만 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들에 의해서 여야 간에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자꾸 원만히 진행되는 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가 제대로 작동되고 다른 데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법사위에서는 가능하면 법리적인 범위 내에서 철저히 하되 범위 밖에 있는 것은 가급적 상임위의 정책적 결단, 판단 사항을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야 간에 A법안이 문제 있다고 잡고, 그것도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B당에서는 또 다른 법안을 잡고 서로 막 이렇게 가승작용을 하다 보면 우리 법사위가 잘못하면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각별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2소위에도 상당수의 법안들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소위도 전해칠 간사님, 그리고 이한성 간사님 협조하셔서 연초에라도 빨리 해서 이번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니까 특별히 법리적으로 문제없는 것들은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어렵게 지혜를 모아서 통과되어 왔는데 법사위에서 정파적이거나 다른 사정 때문에 이를 붙들어 두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빨리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1소위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어렵고 부결시켜야 될 사안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한 의원님이나 이런 등등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것을 부결시키지 않고 자꾸 쌓아 두다 보니까 그게 마치 법사위에서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자동 폐기가 될 것 아니냐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소위에서도 내용적으로 이것은 이번 회기에 통과되기가 어렵다라든 안 되는 이유와 함께 잠정적 결론을 내 주시면 밖에서 보는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8일까지 있는 임시국회 내에서 이런 적체된 것들

이 말끔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예.

○**김진태 위원**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진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예.

○**김진태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우리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무슨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 봉입니까? 의사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여야 협의가 안 됐다고 이것은 그냥 하지 말자고 그러고.

오늘 이게 하기로 된 게 어젯밤 21시 50분에 확정 통보가 왔어요.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법사위 정말?

의사일정 1항 과학교육 진흥법이 여야 정치적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것은 하자고요. 뭐가 안 됐다고 오늘은 그냥 파행이다, 하지 말자, 내일 하자……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우리 여기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다 일정이 있고, 한 달 정도는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1월 8일까지 임시국회면 언제 열릴 건지 지금 정하세요. 바꾸지 마세요. 법안만 숙려기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정한 것도 좀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옳으신 지적이신데 그것은 양당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원내대표 사이의 운영 일정 전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사이고, 그 합의가 또 지켜져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파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과거가 되니까 다른 상대 정파에서는 그것을 문제 삼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각 정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한테 가서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3분씩 하고,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전해철 위원** 오늘도 많은 건수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2소위에 있는 법이나 또 이전에, 예를 들면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거의 대부분이 법사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것이 법사위에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에 대한 약간의 예외를 할 수 있는 생활임금 관련법 같은 경우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여야 협의 과정에서 통과를 한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 그런데 협상을 할 때 약속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다른 법하고 연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을 여당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이 있으니까 여야가 협상할 때 그러면 또 그 법을 통과하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사위의 일정이 이와 같이 순연되고 지연된 것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적절히 이야기하신 대로 가능한 법사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리적인 것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2소위에 가서라도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지 어떤 법은 한두 위원님이 그냥 이야기한 것, 또 어떤 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다시 한 번 통과 약속을 했던 법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구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오히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게, 더더군다나 여야가 합의해서 해 온 것들은 지켜질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자, 이쯤 하시지요.

이쯤 하시지요. 법안이……

저를 따라 주세요. 자꾸 그것 가지고 공방을 벌이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에 다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 공방하다 보면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한 분씩……

○**김도읍 위원** 김진태 위원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전해철 간사가 특정 정당을 비난하면서 마치 새누리당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민 됐습니다. 김진태 위원님이……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니까 협조를 좀 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이것은 양당의 사정 제가 다 압니다. 다 미주알고주알 얘기 안 하잖아요. 양당의 저간에 할 때……

○김도읍 위원 아니, 간사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민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지금 마치 법사위 파행이 새누리당……

○서영교 위원 진행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진행하시지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 참고해 주십시오.

원래는 법안명과 발의한 의원님을 일일이 적시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1.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설훈·이개호·조정식·김태년·도종환·진성준·정진후·임수경·박홍근 의원 발의)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강기윤·여상규·박맹우·이예리사·유재중·김재경·김태흠·김을동·박덕흠 의원 발의)
3.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설훈·이개호·조정식·김태년·도종환·진성준·정진후·임수경·박홍근 의원 발의)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성곤·김종태·류지영·서용교·신상진·이종배·정성호·홍지만·황주홍 의원 발의)
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서상기·정병국·홍일표·김동완·배덕광·이균현·홍지만·이우현·김을동·심윤조 의원 발의)
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심상정·김제남·서기호·박원석·안민석·도종환·유은혜·유기홍·설훈·박남춘·박홍근 의원 발의)

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만우·이한성·김세연·손인춘·윤명희·이에리사·강은희·주호영·홍지만·서상기 의원 발의)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이찬열·노영민·김태년·이상직·김성곤·조정식·전병헌·김윤덕·배재정·유기홍·설훈·김재경·이상민·이춘석·김우남 의원 발의)

9.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조원진·진순옥·윤관석·최규성·김태년·배재정·박홍근·추미애·김영록·설훈·이원욱·도종환·황인자·함진규·박완주·홍철호·윤후덕·강석호·강창일·이개호·이운룡·김한표·유의동 의원 발의)

10.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광진·박원석·서영교·신경민·이개호·임수경·정갑윤·정진후·황주홍 의원 발의)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이한성·박인숙·서상기·정우택·민병주·서용교·김세연·이재영·김종태 의원 발의)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유승우·최봉홍·황영철·이한성·김태원·조해진·김상민·이진복·박대출·서용교·안종범 의원 발의)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안규백·신학용·염동열·박윤옥·장하나·조정식·오제세·임수경·이목희·김승남·이상직·안민석·김성곤·원혜영·유승민·정진후·김광진·문병호·박남춘·한선교·백재현 의원 발의)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진후·조정식·설훈·배재정·이목희·유기홍·박주선·인재근·도종환·이인영·김현미·안민석 의원 발의)

1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도중환 · 박주선 · 박홍근 · 배재정 · 유기홍 · 유은혜 · 윤관석 · 조정식 · 정진후 의원 발의)
- 1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부좌현 · 이원욱 · 강기정 · 김영록 · 김광진 · 강창일 · 남인순 · 임수경 · 박수현 의원 발의)
- 17.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도중환 · 박주선 · 박홍근 · 배재정 · 유기홍 · 유은혜 · 윤관석 · 조정식 · 정진후 의원 발의)
- 1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박수현 · 부좌현 · 이찬열 · 이개호 · 양승조 · 원혜영 · 조정식 · 임수경 · 은수미 의원 발의)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 · 장윤석 · 경대수 · 주영순 · 서용교 · 이종훈 · 김희선 · 박창식 · 김도읍 · 김재경 · 홍문표 · 박덕흠 · 이인제 · 민현주 · 김상훈 의원 발의)
- 2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윤호중 · 배기운 · 이상직 · 진성준 · 안규백 · 김경협 · 배재정 · 김윤덕 · 오영식 의원 발의)
- 2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김윤덕 · 김현 · 도중환 · 박홍근 · 백재현 · 유기홍 · 이개호 · 이상직 · 전해철 · 정성호 · 정진후 · 조정식 의원 발의)
- 2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이한성 · 김세연 · 장윤석 · 유승민 · 김성태 · 이재영 · 주영순 · 황인자 · 이완영 · 이종배 · 류지영 · 길정우 · 한선교 의원 발의)
- 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도중환 · 이학영 · 배재정 · 김태년 · 안민석 · 박주선 · 박혜자 · 김상희 · 정진후 · 김현미 · 유기홍 · 유은혜 의원 발의)
- 24.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 · 김명연 · 김세연 · 선성범 · 윤재옥 · 이상일 · 정두언 · 이재영 · 이이재 · 민현주 · 김상민 · 이한성 의원 발의)
- 25.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 · 장윤석 · 심재철 · 배덕광 · 한선교 · 송영근 · 나성린 · 염동열 · 이노근 · 정문헌 의원 발의)
- 26. 문학진흥법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도중환 · 홍종학 · 부좌현 · 임수경 · 박주선 · 장하나 · 조정식 · 김상희 · 윤호중 · 유은혜 · 김현 · 유인태 · 백재현 · 김성주 · 김광진 · 박광온 · 이목희 · 김현미 · 설훈 · 김용익 · 노영민 · 은수미 · 유대운 · 이학영 · 이춘석 · 신계륜 · 한정애 · 유성엽 · 김영록 · 이미경 · 김성곤 · 정세균 · 이개호 · 김종태 · 최민희 · 김관영 · 정진후 · 우원식 · 김우남 · 박영선 · 김기준 · 배재정 · 김경협 · 전해철 · 서영교 · 김민기 · 박혜자 · 신기남 · 유기홍 · 안민석 · 전정희 · 윤관석 · 진성준 · 오제세 · 최동익 · 신경민 · 정청래 · 김태년 · 김희선 · 박창식 · 이상일 · 이재오 의원 발의)
-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박주선 · 도중환 · 유기홍 · 배재정 · 정진후 · 김현미 · 윤관석 · 신경민 · 인재근 · 김상희 · 이목희 의원 발의)
- 2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윤관석 · 박지원 · 이상호 · 박혜자 · 임수경 · 홍의락 · 윤후덕 · 은수미 · 진선미 · 김현미 · 김기식 · 한명숙 · 전해철 · 이목희 · 김현 · 도중환 · 배재정 · 유승희 · 노영민 · 윤호중 · 최원식 · 진성준 · 유기홍 · 추미애 · 이용섭 · 김윤덕 · 이상직 · 배기운 · 백재현 · 김상희 · 이인영 · 최민희 · 정세균 · 김용익 · 오영식 · 박수현 · 김성주 · 홍종학 · 최재성 · 박홍근 · 정진후 · 박영선 · 박완주 · 인재근 · 유성엽 · 이석현 · 남인순 · 설훈 · 김재윤 · 전병헌 · 이춘석 · 강창일 의원 발의)
-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김학용 · 김희선 · 박인숙 · 서용교 · 신경림 · 신성범 · 신학용 · 윤재옥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종훈 · 김세연 의원 발의)
-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0. 한국수화언어법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1.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7.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49항까지 이상 4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제출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총리와 문화체육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셔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문사업자 등의 소유제한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문사업자 등의 종사자 연수제도를 의무규정을 폐지하여 신문사업자 등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2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여 건전한 영업 질서의 유지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과가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오니 동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하되 그렇다고 핵심을 빠트리면 안 되니까 핵심별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남일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항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5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항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9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검토 결과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5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와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6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8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대 등

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을 동법의 연금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9항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특수외국어 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법률안이고, 의사일정 제1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신청 요건과 허가·등록 등 영업제한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9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상 7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각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자를 지역신문발전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2016년 말까지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대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6년간 더 존속시킬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별표 2 기재 사항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개정안의 체계·자구와 관련해서는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기원의 태권도 승단 심사 시 본인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은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법률안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법과의 중복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문학진흥법안은 문학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문학진흥정책위원회와 국립한국문학관을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률안으로, 검토 결과 국립한국문학관의 법적

형태를 국가기관으로 할지 아니면 특수법인으로 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설립 근거는 물론 법적 형태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 요청되고 이는 유사한 기관 등에 대한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합니다.

입법취지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 그리고 국립과학관, 국립생태원 등 유사 기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립한국문학관은 특수법인으로 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에 따른 일부 조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근거가 되는 법률안 제13조의 인용 법률을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여 문구 정리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28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등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사일정 제28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환경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률안으로, 체계를 정리하고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32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인문학 및 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와 관련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33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현장실습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3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의무화하고 교육비 지원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35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자의 학습비 반환 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등

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3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안전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37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 허가 대상지역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적합한 자가 없으면 신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관광통역안내 무자격자의 외국인 관광안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38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도서관의 정의와 공공도서관 범주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39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 기관·단체 등에 대한 비용 보조 근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40항 한국수화언어법안은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비롯한 관련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41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일정 제42항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복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43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원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음반 등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44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4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국외 반출의 허가신청 기준일을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로 정하고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46항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수리능력 평가·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재수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의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47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폭행, 모욕 등 침해 행위에 대응한 조치와 상급 등 치유와 관련한 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48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진흥기금에서 신문사업 종사자에 대한 연수기구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상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각 일부 문구를 보완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등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확대하며 공개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며,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를 성폭력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 제10조의4제2호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형의 하한을 폐지하고 현행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외에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추가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의 경중을 불문하고 결격사유로 하는 것에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죄의 양상과 형량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지나치고, 나아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기간에도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비추어 보아도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드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국무위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각 소속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24항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유는 공공디자인 이것을 문화체육부에서 종합관리 한다는 것에 일단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요, 관련 부처인 산업부 또 국토부의 의견 조율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하고, 이런 디자인이 산업계 또 여러 가지 국토종합계획에도 다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있습니다. 의사일정 43항도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입한 경우 처벌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부당한 건지 법률의 명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기가 낸 음반을 자기가 대량 구입했다 이것을 꼭 부당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어느 정도까지가 부당한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유 등으로 소위에서 더 논의해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방금 김진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등이 자기들이 주된 부처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반대를 많이 했고 또 나름의 일리도 있어서 조율 문제 때문에 소위로 가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남일 전문위원이 적절히 지적했던 의사일정 30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교육부총리께 한번 여쭙어 보렵니다.

여기서 지적한 대로, 물론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는 과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던 것을 하한을 폐지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강남일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수긍이 될 수 있다 한들 성인 대상의 경우에는 모두 그냥 처벌의 강약을 불문하고 하는 것인데다가 그 기간도 한없이 끄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것하고…… 약간 기간을 늘린다거나 성범죄에 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 대신 벌금형 얼마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약화시켜서, 그러니까 요건을 적게 함으로써 더욱 강한 규제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도 그냥 어떤 처벌을 받아도 되고 또 기간 제한도 없이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되는데 교육부총리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교육부의 입

장은 어린 아동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은 최소한 성범죄만큼은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이러한 데서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교원들이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형의 실효라든지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해서 그 교원이 회복이 되는 경우는 몰라도 그러한 형벌의 효과가 잔존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교원의 지위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임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형의 실효 문제도 그 규정이 없으면 실효기간이 지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저는 절충안으로, 소위로 돌리면 너무 힘들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이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수정안이……

○**위원장 이상민** 30항이요?

○**임내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30항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원하신다고……

○**임내현 위원**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그 기간 중에 방금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것이……

○**전해철 위원** 소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임내현 위원** 하여튼 저는 이걸 부처 버리면 너무 힘들다는 뜻에서 하나의……

○**위원장 이상민** 아니, 수정·보완이 가능하면 지금 하시지요.

강남일 전문위원, 임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보완이 안 되나요,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 강남일** 이게 수정·보완이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년 대상이라 할지라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그러니까 형의 경중이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이렇게 결격사유로 하게 되면 다른 법하고도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지도사나 아이돌봄지원법상 아이돌보미의 경우도 아동을 상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아이돌보미나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10년의 결격사유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기간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철래 위원님 하시고 서영교 위원님, 다음에 김재경 위원님.

○**노철래 위원** 문체부장관님, 의사일정 24항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다 논의가 끝났습니다.

○**노철래 위원**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의견조율이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다 끝났습니다.

○**노철래 위원** 언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난주에 다 끝내 가지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쪽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별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국토교통부도 요 범위 설정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노철래 위원** 완료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오늘 아침에 다 끝났습니다.

○**노철래 위원** 아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철래 위원** 사전에 제가 좀 감이 없어서요. 김진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김진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해서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그게 김진태 위원님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야 되니까 안을 가져오신 것을 지금 배포해 주시지요.

○**노철래 위원** 합의된 것 있으면 배포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장님, 수정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되면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정부 측하고 조정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것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반영이 된 내용입니까, 수정안이?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정안에 반영됐습니다.

○노철래 위원 임내현 위원도……

○임내현 위원 저는 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도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양해를……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저한테 저기를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일 전문위원, 지금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수정안을 만든 것이 배포해 드린 수정안이라는 거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수정안입니다. 오늘 아침에 수정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그것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음에 김재경 위원님 차례인데 임내현 위원님, 이와 관련된 겁니까?

○임내현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저도 양해하는가를 물어봐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임내현 위원 그래서 확인이 됐다면 저도 양해를 한다 이것이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재경 위원 고정하시고, 저는 임내현 위원님 하고 김진태 위원님이 수정안에 동의하신다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게 쟁점입니까?

그러면 강남일 전문위원, 24항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에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지금 2소위 의견이 43항하고 30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한성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장님, 2소위 하시겠다는 43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요 내용이 왜 이렇게까지 징계를 해야 되고 벌을 해야 되느냐는 사실 간행물 사재기 등을 금지하는 간행물 유

통질서에 관련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것과 유사입법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더 엄한 벌을 내리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런 의견을 담아서…… 형사법체계가 각 개별 상임위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형평이 안 맞거나 균형이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법무부 측이나 저희 법사위에서 형사법체계, 양형문제 등을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 그걸 조정한다면 다음에 통과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장관님, 이게 시급성이 그렇게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1월 8일 전까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는 안건 2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산업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고 한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산업교육센터의 설치 요 자체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재원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재원 마련에 관한 이야기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이 법안이 진행되었으면 해서 2소위에서 논의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2항이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의사일정 24항은 그렇게……

○위원장 이상민 예, 수정안대로.

○이한성 위원 수정안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26항 문학진흥법안,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2소위라도 가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문제 제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국립한국문학관 관련해서 형태를 법인 형태로 할 것인지 국가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특정이 되지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특수법인으로 할지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특수법인으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있고 대체로 다른 조문이 전체적으로 특수법인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특수법인으로 하는 것이 맞고 또 국립과학관이라든지 생태원 같은 다른 특수법인과 균형을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기관 보다는 특수법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에 조문이 지금 정리가 됩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예, 특수법인을 전제로 해서 수정의견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예,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44항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대화가 좀 됐습니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작권보호원 설립 이게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서 공공부문의 확대나 규제가 신설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인력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또 보호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에서 저작권 보호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이럴 것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도 대화가 미진한 걸로 그쪽에서 이의를 좀 하니깐 이것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달리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소위 의견입니까, 26항?

○이한성 위원 44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리해 가지고 해도

문제없게끔 내년도에 다 잡혀는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조금만 대화를 더 나누고……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요.

의견이 소위 의견입니까, 전체회의 의견입니까?

○이한성 위원 장관님,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인력은 저작권보호센터하고 저작권위원회 일부 인력이 이리로 넘어가면서 69명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관을 분리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16년도 예산이 이미 15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께서 좀……

○이한성 위원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해철 위원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아까 26번 문학진흥법안은 이야기한 대로 발의한 의원이나 논의과정에서도 법인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한다고 하니깐 그대로 통과하면 될 것 같고요.

44번 저작권법, 문체부장관님 정확하게 좀 해보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재부 우려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별도의 조직 신설이 아니고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양해가 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전해철 위원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이 법은 많은 논의를 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장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런 기재부의 우려가 많이 해소된 걸로 봐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한성 위원 기재부는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전해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한다면 전체회의에 놔두시든지 하고요.

의안번호 40번 한국수화언어법안, 이게 교육부 총리님 담당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닙니다. 문체부 담당입니다.

○전해철 위원 문체부장관님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전해철 위원 문체부장관님, 수화언어법안 그

것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전해철 위원 그것은 제가 잡자는 건 아니고요, 이 법안 보면 실제로 처음으로 수화언어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든지 등의 근거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그 숫자에 불문하고 농아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해서 자칫 혼시규정이나 실효성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봤을 때는 관계부처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 법안 내용이 실효성도 있고 또 실제로 우려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법 통과로 좀 각별하게 문체부장관께서 의지를 갖고, 이 법안 하나하나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걸 바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농아인들이 바라는 이 법에 대한 취지니까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위원님 말씀 잘 만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국어교육과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하게끔 돼 있고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수화언어 관련해서 저도 전해철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이고요. 지역구를 하다 보니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사이에서 눈에 안 띄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보게 됐거든요. 숫자가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장애보다 이분들은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아까 30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임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교육공무원은 사실 성폭력범죄, 미성년 대상이든 성인 대상이든 성폭력범죄를 한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는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나마 형의 종류나 경중, 결격사유, 유효기간 이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회에서 아이돌보미는 10년…… 그 아이돌보미 10년

을 바꿔야지요. 거기다 제한을 두지 말아야지요. 아이돌보미 10년에 맞춰서 이쪽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아이돌보미에 10년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지 이쪽은 오히려 제한을 두지 않고, 성인이든 아동이든 성폭력범죄자는 제가 보기에 교육공무원—그것도 공무원인데요, 교육자고. 이것은 제한 두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이 교육위를 통과해 온 것 같은데 다시 논의한다고 해서 2소위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30항을 어떻게 하자는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2소위 회부예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고 했는데 거기로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27항, 28항에 대해서 교육부총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보건교사와 일반적인 노조 사이에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교사들은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일반 공무원과 보건교사 간에 의견이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황이라 이 조문을 어느 일방으로 손대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홍일표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한 뒤에 하면 어떨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부분은 이것 한 조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내버려 두는 것으로 교문위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건교사들을 좀 설득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이 법이 다른 조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안자도 그 조문은 이번에 이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낙찰이 돼서 이 법이 법사위에 온 겁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교육·보건 종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어서 의견 조율을 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안자 원안에 따라서 하면 그것이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법사위에 상정된 교육환경보호법이나 이 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새로 입법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홍일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현 상태를……

○홍일표 위원 문제의 소지를 여기에 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법안 제의자가 그것은 본인이 썼다 이런 뜻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것은 어떤 변경하는 조문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교문위에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노철래 위원 발의자가 양해를 했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홍일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양해하신 사항인가요?

○전해철 위원 통과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위원들이 안 계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40항 한국수화언어법안을 내서 이 대안 중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통과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장관님, 이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방송을 들어보면 다 서울 얘기만 있어요, 서울 교통사정,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사고. 지방 얘기는 들려오지도 않고 그게 독과점이 날로 더 심화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역민들의 뜻이 전달되고 그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언론사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방송가는 물론이고 신문사도.

그래서 균형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지방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잖아요, 충분히 뜻이 있고. 그래서 장관님께서서는 문체부 차원에서, 이게 그냥 뒤편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될 지경

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지급하고 해외 연수 몇 번 보내고 이런 차원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이상민 서울제국이에요. 방송 다 들어보세요. 종편 들어보면 다 서울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지상파도 마찬가지로 신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신문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균형 있는 여론 형성 또 지역민들의 뜻 전달·대변 이런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부총리님, 고등교육법 이것은 부총리께서 교육위원장으로 계시던 시절부터 시간강사 문제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이분들이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확보하고 또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길목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건 공감하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때 17대 때도 교육위원장으로 직접 수행하시면서 이 문제의 굉장한 심각성을 아셨는데 이것 해결을 못 하시고 부총리 그만두시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부총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싶기도 하고.

어떤 대책이 교육부에 있습니까, 시간강사 문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문위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부대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교문위에서 상세한 부대의견을 교육부에 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유예를 하고, 교문위에서 마련한 부대의견은 교육부와 함께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교육부가 이번에 철저히 이행을 해서 다시는 유예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투입이나 이런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유예를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다 진전된 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지급하다니까 통과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미봉책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부대의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항·3항·4항·7항·10항·12항·13·14·15·16·17·18·22항·23항·25항·29항·4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7항은 원안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불러 드린 순번하고 27항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 5항…… 아, 2항은 2소위 의견이지요. 5항, 6항, 8항, 9항, 11항, 19항, 20항, 21항, 24항, 26항, 27항, 28항…… 27항은 원안대로이고, 27항은 아까 원안대로 했습니다. 26항, 28항, 30항, 31항, 32항, 33항, 34항, 35항, 36항, 37항, 38항, 39항, 40항, 41항, 42항, 43항, 45항, 47항, 48항의 법률안은……

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항·6항·8항·9항·11항·19항·20항·21항·24항·26항·28항·31항·32·33·34·35·36·37·38·39·40·41·42·45·46·47·4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항·30항·43항은 2소위로, 44항은 전체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우여 부총리님, 그다음에 김종덕 장관님,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또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월 8일 전에 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테니까, 황우여 부총리님 오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위원장님 뵈러 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 소관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동안에 잠시……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교육부장관님, 아이들 화장실 개선사업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애들이 화장실을 못가겠대. 참았다가 집에 와서 화장실 가는 동네는 바뀌 주셔야지.

○위원장 이상민 다섯 분 다 와 계신가요?

안전행정위 소관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법안명과 발의자를 적시해서 말씀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박덕흠·최봉홍·이강후·정수성·이종진·여상규·이진복·길정우·심학봉 의원 발의)

5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개호·김우남·강창일·신경민·부좌현·박남춘·이춘석·이종배·양승조 의원 발의)

5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6.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이종배·이한성·류지영·유승민·정병국·송영근·박맹우·이재영·길정우 의원 발의)

5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황주홍·이개호·강창일·박남춘·김성곤·민홍철·박민수·노영민·김윤덕 의원 발의)

5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부좌현·진성준·이개호·김성곤·박민수·정청래·정성호·이상직·강동원 의원 발의)

6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한선교·김태원·권은희·강기윤·이한성·윤상현·김광림·정병국·송영근 의원 발의)

6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류지영·황주홍·박명재·안홍준·강기윤·이한성·김광림·정병국·송영근 의원 발의)
6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김재원·황주홍·이한성·김광림·박맹우·주호영·정갑윤·이명수·황진하·서청원·이철우 의원 발의)
6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박민식·류지영·이한성·김종태·신경림·김광림·주영순·정미경·길정우 의원 발의)
6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7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7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7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박홍근·최규성·배재정·윤관석·김영록·최민희·추미애·조정식·심재권·신정훈·박원석·이원욱 의원 발의)
7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민홍철·박홍근·배재정·김기준·박남춘·박영선·황주홍·이목희·정청래·유기홍·김성곤·최동익·김상희 의원 발의)
74.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박상은·김진태·신경림·주승용·이재영·강기윤·김희국·정희수·안홍준 의원 발의)

7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한성·윤명희·박명재·조명철·이완영·박인숙·김종태·이에리사·박윤옥·이자스민·윤재욱 의원 발의)
7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77.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7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79항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그리고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강신명 경찰청장, 다섯 분이 출석하시고 그 소속 공직자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위촉사항을 삭제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도로의 일시 무단 점용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셔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 순으로

맡고 계신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50항부터 56항까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실협회의 감독 규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이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행·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 설치의 권장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관련 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없이 농어촌도로에 인공구조물 등

을 쌓아 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장·군수가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79항까지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9구급차의 배치 기준, 장비 등 운용에 있어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국민안전처가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지도의사를 선임·위촉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약칭 규정에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어순에 맞게 일부 문장과 자구를 정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은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관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긴급구난 시작업 시작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

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4·16 세월호 참사 관계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이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의 용어를 인용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승강기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노후 승강기에 대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였고,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사고 원인에 대한 판정 등 심의 의결이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그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의 내용대로 공무원 의제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다시 하도록 재검토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관리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약칭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관계 기관'이 다른 조항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명칭을 바꾸어 약칭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하천의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하나의 호 내에 두 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각 호로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구·시·군 선관위 위원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기를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선거연수원장의 직급을 현행 2·3급에서 1급으로 변경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다만 선거연수원장의 직급 상향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원으로 채용 전에 신입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조항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현행 경찰청 훈령인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복되는 집회·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선순위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과태료 부과 조항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장을 정리하는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면허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해당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인용 조문과의 문구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명칭의 띄어쓰기 등을 맞추어 규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제58항, 제59항, 제61항, 제62항, 제63항, 제72항, 제74항, 제76항 등 9건은 검토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71항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인데요, 이게 선거연수원장의 직급을 상향하려는 것인데 타당성에 좀 의문이 있고요. 또 향후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예산 부처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요, 개정안 선거연수원의 업무 중에 이제는 유권자까지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선거 및 정당 관계자를 교육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 일반 시민에게까지 선거법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

○**노철래 위원** 저 간단한 거 하나……

○**위원장 이상민**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안전처장관님, 잠깐……

62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위원장 이상민** 우선 결론으로 62항은 2소위 의견이십니까?

○**노철래 위원** 답변을 들어 보고 2소위를 할 건지, 전체회의에 계류할 건지, 통과시킬 건지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노철래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민방위 경보가 발령됐을 때 예를 들어 운수시설이나 대형건물, 대규모점포, 영화관 같은 데에 바로 경보를 알려서 재난으로부터 건물 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에 돼요.

그런데 지금 민방위 경보 가청률이 이번 1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81.3%로 100명 중 19명이 듣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밀폐된, 폐쇄된 공간 이런 데겠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런 겁니다.

○**노철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9% 여기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보를 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바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요새는 영화관도 관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까지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청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그 보완대책이 가능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무화를 한 거지요. 이 법의 정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 18% 정도가 가청이 안 되는 겁니다.

전에는 건물이 단순화됐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중이용시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청하는 구역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번에……

○**노철래 위원**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면 19%에 해당되는 미가청 지역을 가청이 될 수 있도록 해소가 가능하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경찰청장께 79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급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하도록 하는 그 취지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 조사해서 했겠지요?

○**경찰청장 강신명**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하여튼 법안 취지가 좋으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실제 긴급자동차 운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님이 그때 모세의 기적법이라고 이렇게 죽 비켜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또 거짓으로, 요건이 안 되는데도 허위로 긴급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적지 않게,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강신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것 의논하실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안 말고 현안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결 먼저 하고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어떤 장관님한테 물으실 건가요?

○서영교 위원 국민안전처장관하고 경찰청장님한테, 현안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위원장 이상민 의결 먼저 하고, 지금 정족수 문제가 있어서요.

○서영교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위원장님, 7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안 소위회부하자는 건에 대해서요, 제 생각에 지금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원장의 직급을 1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하고 유권자 교육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유권자 교육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논란을 계속하면 법 통과가 어려우니까 유권자 교육 부분하고 원장 1급 상향시키는 부분을 빼고라도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들이 같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 직급하고 유권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이것을 삭제하고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임재주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여기 수정이 지금 될까, 직급 조정 규정을 삭제하자는 취지입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예, 15조의2 1·2항에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아까 1항 부분의 유권자 부분, 2항 부분의 1급 규정……

○이한성 위원 유권자 교육 규정 그것을 삭제하고.

○전문위원 임재주 예, 15조의2 선거연수원 관련된 개정 조항만 삭제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유권자 교육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김진태 위원님, 그렇게 하면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이 됐으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김진태 위원 조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

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사무총장님, 유권자 교육이 주민 투표 및 주민소환 관계 법률 이런 것 관련해서 유권자 교육도 포함되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선거법에서의 유권자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법에서는 유권자에 대한 홍보를 당연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연수원에서도 그 기능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유권자 교육을 수십만 명 직접·간접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법률에 담고자 하는 건데 기재부에서는 아마 그게 명문으로 들어가면 또 추가적인 예산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이게 명문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유권자 교육은 지금 하듯이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그 두 가지를 뺀다고 지금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유권자 교육이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꼭 아니다……

선거제도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중립을 지켜야 될 선관위가 나서서 하다 보면 자칫 오해 받을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빼고 통과시켜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교육을 할 때도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 두 가지를 뺀다고 그러면 통과를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이요, 법안 통과가 중요한데 그런다 하더라도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한 대로 직급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기재 부하고 협의하는 게 맞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전해철 위원 또 그 부처에 대해서 여러 예산을 보는 것에……

그런데 연수 대상 확대는 지금 선거법에 있다면서요. 선거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유권자 홍보에 관해서 당연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현행 위원회법에도 홍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전해철 위원 조문 한번 불러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선거법 14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 의식 양양을 위한 선거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급 조정에 대한 것은 수정안으로 해서,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또 선관위에서 삭제를 한다고 하니까 삭제하고 하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근거도 있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어서, 또는 위원장님 생각에…… 아무튼 첫째, 직급 조정만을 삭제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선관위가 교육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요? 돈 더 안 들고 지금 형태로 가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방금 김진태 위원님이 우려를 표시한 대로 이것도 심층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서 당장 이렇게 즉흥적으로 삭제했다 뺐다 하는 것 보다는 2소위로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는 2소위로 넘어갔을 경우에……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게 시급히 시행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다른 노력을 또 기울여서 하도록 하고요, 이것 빼고서라도 통과를 꼭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두 가지 빼고 가든가요.

○전해철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어떤 조문이예요? 지금 급하게 해야 될 게 뭐니까? 직급 이런 것 말고 그냥 한두 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첫 번째

는 주민투표·주민소환 관계 법률에 대한 선관위의 개정의견 제출 건이라는 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구·시·군위원회 위원 임기를 6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등……

○전해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선관위 사무총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건데 다만 저는 이야기한 대로 이게 법에 근거도 있고 할 때 그것을 원칙 없이 자꾸 해당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이것을 삭제하고 통과하는 게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71항은 수정해서, 이것 임재주 전문위원인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위원장 이상민 직급 조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권자 상대 교육, 그 부분을 삭제하고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52항·53항·54항·55항·56항·57항·58항·59항·61항·62항·63항·72항·74항·7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51항, 60항, 64항, 65항, 66항, 67항, 68항, 69항, 70항, 71항, 73항, 75항, 77항, 78항, 7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미상정 법률안까지만 오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행자부장관님, 경찰청장님 또 국민안전처장관님, 인사혁신처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상민 현안질의요?

○서영교 위원 예, 국민안전처장관님과 그다음에 경찰청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문 좀……

○위원장 이상민 아니, 정개특위 법안 의결이 지금 급해서 그래요.

○서영교 위원 잠깐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국민안전처장관님, 수고스럽지만 같이 계시지요.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지금 정개특위가……

○서영교 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질문할게요.

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김성곤·조정석·이윤석·최민희·신장용·배기운·최원식·이인영·도종환·주승용·이해찬·전순옥·이한성·전해철·강창일·윤관석·남인순·안홍준 의원 발의)

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회장 제출)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회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80항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0항부터 82항까지 정개특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 모집 등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비용 부담 의무를 지는 정당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문장을 다듬는 등의 수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정개특위는 시급한 건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8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8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해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사진행발언이네요?

○전해철 위원 30초만 하면 됩니다.

의결됐지요?

○위원장 이상민 예.

○전해철 위원 오후에 산업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야 간사는 합의했는데, 2소위에 있는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간사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실무적으로 2소위에 있는 걸……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소위로……

그러면 양 교섭단체 간사 사이에 합의가 됐고 원내대표 사이에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재 2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세요?

○김도읍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이견 원내대표끼리도 합의한 건데.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원내대표끼리 합의……

위원장님께서도 양당 간에 합의가 됐다 해도 숙려기간 안 지나면 원칙대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법사위 4년을 하면서 소위에 있는 것을 소위 위원들께서…… 저희들이 소위로 넘겼으면 소위에서 회의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민 사무총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중앙선관위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심사는 되어야 되는데 심사도 하지 않고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회의를 열어 가지고 전체회의에 이렇게 상정을 시키겠다, 도대체 저는 처음 보거든요?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간사님, 말씀 안 나누셨나요?

○김도읍 위원 지금 쟁점 법안들이 여든 야든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법안들이 형평을 가지고 처리가 되지 않고…… 저는 2소위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 양당 원내대표들께서 어떤 이유에서 합의를 했는지 저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2소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또 편파적으로, 아무리 의결을 거치지 만 이렇게 전체회의에 끌어올린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렇게 하시지요, 산자위 관련 법안은 장관 출석 문제 때문에 5시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하고, 이한성 간사님은 특히 당 소속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지요.

○이한성 위원 제가 불신을 받든지 설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민 이렇게 하시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한성 위원님이 말씀 한번 하시고.

○노철래 위원 그래요, 시간이 있으니까 양 간

사 간에 더……

○위원장 이상민 간사 협의가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 내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아니 위원장님, ‘새누리당 내 의견이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저희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소위에 있는 것을 심사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전체회의로 끌어올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저한테 양당 간사가 ‘이렇게 합의했다’고 했고,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법사위가 계속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했고, 그래서 각 당에서 의견 된 것은 제 입장에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셨다고 하니까 간사님이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김진태 위원 여야 합의 다시 하세요, 인정 못 합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하세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실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정회되었던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실장께서는 빨리 위원님들 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입법조사관 이진구 예.

○위원장 이상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과 전체회의 계류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립·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17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

17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조정식·변재일·송호창·김관영·전정희·김상희·배재정·윤후덕·한정애·박광은 의원 발의)
17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이상직·민홍철·이개호·김성곤·김기준·부좌현·임수경·박남춘·김상희·김광진·송호창·이목희 의원 발의)
17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안규백·김태년·김춘진·이찬열·김상희·이미경·설훈·원혜영·이원욱·심재권·이석현 의원 발의)
17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정청래·조정식·이개호·박홍근·김상희·장하나·이목희·김영주·우상호·안규백 의원 발의)
1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미경·유은혜·김기식·이인영·민병두·이춘석·노웅래·정호준·김성주·최민희·박남춘·전해철·우상호 의원 발의)
17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은·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1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은·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19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백재현·변재일·박홍근·황주홍·김광진·신경민·김태년·조정식 의원 발의)
19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은·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19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19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기준·백군기·심재권·최민희·權垠希·안민석·박수현·최원식·김태년·윤호중·은수미·진선미·김기식·이학영 의원 발의)
19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정희수·류지영·인재근·박맹우·심

학봉 · 권성동 · 양창영 · 김기선 · 김제식 의원 발의)

-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윤관석 · 배기운 · 김성곤 · 이학영 · 주승용 · 전순옥 · 민홍철 · 이상직 · 이상민 · 유성엽 의원 발의)
-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이완영 · 김상훈 · 김기선 · 김한표 · 강기윤 · 김희선 · 박명재 · 이이재 · 송영근 의원 발의)
- 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운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
- 20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0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0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08.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0.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최원식 · 은수미 · 진성준 · 김용익 · 김진표 · 원혜영 · 한정애 · 추미애 · 배기운 · 이찬열 · 장하나 · 최민희 · 한명숙 · 진선미 · 임수경 · 전순옥 · 김재윤 · 박남춘 · 안규백 · 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2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박병석 · 김기준 · 박민수 · 강기정 · 이원욱 · 정세균 · 홍익표 · 은수미 · 김성주 · 이미경 · 임수경 · 박주선 ·

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이상민** 170항부터 212항까지 4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서명하고 2016년 발효가 예상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유기수은 외에 무기수은과 그 화합물도 동법의 관리대상 물질에 추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한편 유기수은뿐 아니라 무기수은도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법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은 하수관거 관리, 폐수 재이용계획 수립 등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규제를 정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수 토지 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장료를 폐지하였고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주체를

정부로 명확히 하여 하위법령에의 위임범위 일탈 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211항·212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16일 3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 대체토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0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1항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2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77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8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79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3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7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9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0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2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7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0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8항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항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검토 결과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74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보호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75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의 긴급 제한조치등을 규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176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180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그 제품의 수거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수거를 명하거나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8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82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환경부령보다 더 엄격한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186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기준보다 높은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88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93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94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고용노동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96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복지기본계획 수립 시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99항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을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20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203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법 시험 수수료의 근거 규정을 설치하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20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관련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207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진사업장의 대행 측정 제도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209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84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명시하고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화학물질 안전원장 등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화학물질 등록·평가 업무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5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과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 근거가 그 법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맞게 수정하고 부칙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5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격 취소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야 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8항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강화하고 관계자가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제출 행위를 처벌하는 외에 거짓 진술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01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불임금 지급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두 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제공 요청 시 해당 자료의 내역과 그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5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정훈련을 방지하고 부정훈련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중복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서 행정착오로 지원된 경우를 부정수급에 대한 환급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착오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6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사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자의 요청으로 공기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29조제8항제3호는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하였으나 도급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 간의 채권·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통해 일정한 행위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나친 규제에 보아 이를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이를 수정하며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포해 드린 법률안 순번 또 법안명, 법사위 회부일 등등은 속기사님들이 뒤에 이것을 첨부해서 회의록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몇 번이 어떻게 됐는가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5시16분)

○위원장 이상민 이 안건, 법률안에 대한 심의 이전에 의결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2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아직 결론이 안 났고 또 이에 대한 여야 간의…… 원내대표 또 간사 사이에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이 협의해서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해서 심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따 산자위 법안을 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뜨거운 쟁점인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 변호사시험법 개정 검토뿐만 아니라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위해서 법사위 내에 자문기구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위원들에게 일단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와 같이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17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배덕광 · 류지영 · 이자스민 · 문대성 · 최봉홍 · 윤영석 · 이상일 · 김도읍 · 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17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조정식 · 변재일 · 송호창 · 김관영 · 전정희 · 김상희 · 배재정 · 윤후덕 · 한정애 · 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17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이상직 · 민홍철 · 이개호 · 김성곤 · 김기준 · 부좌현 · 임수경 · 박남춘 · 김상희 · 김광진 · 송호창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17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안규백 · 김태년 · 김춘진 · 이찬열 · 김상희 · 이미경 · 설훈 · 원혜영 · 이원욱 · 심재권 · 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17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인재근 · 정청래 · 조정식 · 이개호 · 박홍근 · 김상희 · 장하나 · 이목희 · 김영주 · 우상호 · 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1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이미경 · 유은혜 · 김기식 · 이인영 · 민병두 · 이춘석 · 노웅래 · 정호준 · 김성주 · 최민희 · 박남춘 · 전해철 · 우상호 의원 발의)(계속)

17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7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7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8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8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8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8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8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8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 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8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8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계속)
- 19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 19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 19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 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 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1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 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 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 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19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백재현· 변재일·박홍근·황주홍·김광진·신경 민·김태년·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19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 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 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 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19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 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 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19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 원 대표발의)(김영주·김기준·백군기·심 재권·최민희·權垠希·안민석·박수현· 최원식·김태년·윤호중·은수미·진선 미·김기식·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19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 민·정희수·류지영·인재근·박맹우·심 학봉·권성동·양창영·김기선·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 일·윤관석·배기운·김성곤·이학영·주 승용·전순옥·민홍철·이상직·이상민·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이완영·김상훈· 김기선·김한표·강기윤·김희선·박명 재·이이재·송영근 의원 발의)(계속)
- 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 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 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20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 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 동위원장 제출)(계속)
- 20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20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 동위원장 제출)(계속)
- 208.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 20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계속)
- 210.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계속)

2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최원식·은수미·진성준·김용익·김진표·원혜영·한정애·추미애·배기운·이찬열·장하나·최민희·한명숙·진선미·임수경·전순옥·김재윤·박남춘·안규백·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2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박병석·김기준·박민수·강기정·이원욱·정세균·홍익표·은수미·김성주·이미경·임수경·박주선·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15시18분)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70·171·172·173·177·178·179·183·187·189·190·191·192·197·200·208·210·211항의 각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74·175·176·180·181·182·184·185·186·188·193·194·195·196·198·199·201·202·203·204·205·206·207·209·212 각 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한성 위원 211, 212 의결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민 211, 212 다 상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볼 때 대체토론의 순서고 이에 대한 의견, 질의 없냐고 물어봤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의 없으시냐고 하니까 이의 없다고……

○서영교 위원 없다고 해서 두들겼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아직 안 두들겼어요.

○이한성 위원 211은?

○위원장 이상민 211은 두들겼어요.

○김진태 위원 211은 아니잖아요.

○이한성 위원 211하고 212는……

○전해철 위원 두들겼다니까요.

○이한성 위원 그것은 안 되고……

○노철래 위원 아까 210까지 상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상민 212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지요.

번복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여야 간사 사이에 211항하고 212항 협의 좀 하세요.

그러니까 212항은 일단 의결 안 했으니까 빼고 211항은 했지만 추후……

○이한성 위원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본회의 회부를 안 한 다니까요. 안 할 테니까……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안 되지요’가 아니라……

○김도읍 위원 법사위 전체회의……

○위원장 이상민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제가 순번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이의 없느냐고 했잖아요.

○이한성 위원 복잡하고 하도 바빠서……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자니까요.

제가 안을 낼게요. 211, 212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211은 지금 가결됐지요?

○이한성 위원 가결하면 안 되고……

○위원장 이상민 의결이 됐다니까, 제 말씀 들으시라니까.

그러니까 본회의 회부를 안 할 테니까, 제가 사인 안 하면 회부가 안 돼요. 안 되니까 211하고 212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김진태 위원 그건 아니지.

○위원장 이상민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서로 간에 신의가 있으니까.

○전해철 위원 어차피 잡아 놓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김도읍 위원 안 똑같지요.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착오로……

○위원장 이상민 자, 이렇게 하세요.

일단 212항을 빼고……

제가 정리 좀 합시다.

209항까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2항은 의결 처리가 안 됐고 211항은 가결 처리가 원안대로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 이견이 있으니까 통틀어서 이 부분은…… 211항은 가결되었지만 회부 안 할게요.

○이한성 위원 212항도 가결해 놓고……

○김도읍 위원 아니지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야지요.

○전해철 위원 가결해 놓고 합시다.

○김도읍 위원 안 된다니까요.

○이한성 위원 같이 가면, 본회의에 안 보낸다니까……

○김도읍 위원 회의 진행상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전해철 위원 212항도 가결해 놓고 두 건 다 놔두면 되지요.

○김도읍 위원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이상민 이것은 위원장한테 말씀하세요.

착오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회의록 보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착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212항까지 대체토론이 있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행, 본회의에 회부를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전해철 위원 212항까지 가결해 놓지요.

○김도읍 위원 안 되지.

○위원장 이상민 212항은 됐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시는데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기관 소속 공직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됩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착오로 이의 제기를 못 하고 의견 개진을 못 했으면,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 이상민 전에도……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도 의결 처리해 놓고 나서 위원님들 중에 ‘이미 가결 방망이를 두들기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번복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아니라 211항, 212항을 같이 묶어서 공동 운명으로 해가지고 의결 처리된 211항도 본회의 회부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적절하게 절충이 되면 그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서영교 위원 현명한 안이네요.

○위원장 이상민 서로 간에 법사위 하는데 신의를……

○이한성 위원 하도 빨라 가지고……

○위원장 이상민 아이 참, 빨리 하라면서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장님,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212항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법안을 낼 때 일찍 내서 시행일이 부칙에 15년 7월 1일로 돼 있는데 이미 도과가 돼서, 16년 3월 1일로 그 부분은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문위원, 그것을 안건으로 수정해서…… 이미 시행시기가 지났으니까 고쳐서 다시 수정안을 만드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수정이 안 되지요, 가결을 다 했는데.

○서영교 위원 212항은 가결을 안 했다니까요.

○위원장 이상민 지금 212항을 말하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놔둬야지 가결시켜 놓고……

○위원장 이상민 아니, 법사위 전체회의에 놔둔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본회의에 회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김도읍 위원 통과시켰다면서요. 그리고 본회의 가는 과정에 놔둔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민 본회의에 안 보낸다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영교 위원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통과 됐으면 본회의에 보내세요. 왜 안 보내세요?

○위원장 이상민 됐어요, 그만.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위원장한테 맡겨 두세요.

○정갑윤 위원 212항은 그냥 놔두고 21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 하고.

○위원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김도읍 위원 회의를 이렇게 갑작스레 전날 밤에 하나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회의 다른 위원들, 전날 밤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회의 안 할 거예요? 이게 그런 사정이 있고 내가 그런 걸 미주 알고주알 말씀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국토교통부에서 다음에 처리해 달라고 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김명연·류지영·이재영·이정현·박명재·양창영·민현주·문정림·유재중 의원 발의)

1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장하나·조정식·김성곤·정진후·서기호·안규백·추미애·서영교·이원욱·임수경·박홍근·이목희 의원 발의)

1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1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12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강기윤·정문현·이명수·황영철·송영근·염동열·김상민·권성동·이노근·이한성 의원 발의)

129.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신경림·안홍준·박윤옥·정성호·이명수·김명연·박성호·길정우·김정록·이현재 의원 발의)

1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박대출·

김태흠·홍지만·김태환·염동열·이완영·김제식·문정림·송영근·이재영·이종훈·전하진·김학용·이명수·황인자·박윤옥·이종진·김정록·박인숙 의원 발의)

1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13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손인준·윤명희·박명재·이상일·송영근·서청원·김종태·이철우·박창식·조명철·홍철호 의원 발의)

13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13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황인자·최봉홍·김태환·이한성·심학봉·송영근·조명철·김상훈·박대동 의원 발의)

135.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김기선·이명수·이만우·전하진·양창영·김명연·박윤옥·홍문중·주호영 의원 발의)

13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정청래·오영식·이상직·김성곤·부좌현·박남춘·홍문표·김춘진·유성엽 의원 발의)

13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3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8.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15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김제식·이종배·김성찬·강기운·김정록·유재중·정용기·윤재욱·이명수·문정림·이종진 의원 발의)
- 16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5시21분)

○위원장 이상민 제124항부터 169항까지 46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신 국무위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두 분 출석하시고 두 기관 소속 공직자들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과 지원을 위하여 1963년에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 국제사회에 원조를 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의 지위가 변경되었고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제정안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된 인증기관을 통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태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심태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들 중 의사일정 제12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7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30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1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32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33항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34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의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7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43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6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8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51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3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58항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법안들입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5항 장애

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35항 결핵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36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8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2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4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9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0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52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56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1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2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3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5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9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규정 중 수범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의무위반행위인지가 불분명한 안전관리 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0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적격 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 받은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등을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등을 조사하도록 하며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해·거부라는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금지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정책개발원 설립에 관해서 현행 청소년정책연구원과 기능·역할이 중복되어 예산 낭비 우려가 있고 현행과 같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7개 위탁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생사 자격 및 면허에 대한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생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정한 부분이 시험 응시가 아니라 위생사 면허 발급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47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표자 명칭을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총재가 개정안에 따른 이사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4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선별급여의 요건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일정한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해·거부라는 규정만으로 어떤 범위에서 금지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조항을 삭제했고, 개정안 제96조 1항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확정일자 부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진 주택임대차계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자료 제공 시에 임대·임차인의 건강보험료 상승 우려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 필요성이 있다는 점, 축소신고로 인한 통계 왜곡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정확성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55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집의 종류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질병을 가진 영유아들을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집 이용 우선요건에 ‘질병’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

하여 개정안과 같은 형식으로 질병을 추가하는 경우 영유아가 아닌 보호자의 질병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질병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질병이란 단어 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현행 규정에서도 질병을 가진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일정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들도 질병 종료 확정이 있을 때까지 어린이집 등원을 할 수 없는 점, 질병은 영유아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7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연명의료의 기본원칙, 연명의료 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하고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문구의 관계상 연명의료 결정은 연명의료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결정’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으로 수정하였고, 개정안 제28조제2항에 의할 경우에도 호스피스는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의사’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8조제3호는 무연고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모두 맡기면서 해당 위원회가 갖추어야 될 법적 제도장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 이를 보완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9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모든 시험·검사기관이 이용하도록 확대하고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

로 단순 부작위의 모든 경우를 형벌에 처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보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0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에 실험동물자원은행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동물실험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그 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운영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운영 정지를 명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28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을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4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향 삭제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품질관리인이 직무 수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을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직무 수행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8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잠재적 조직기증자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조직은행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고 그 밖에 관련 조항에 관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157항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이것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또 전문위원이 수정한 안에 의하면 수정안 2조 4호 연명의료의 의학적 시술에 한의학적 시술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망진단서 발급 권한도 한의사에게 있는 것 등에 비추어서 우리 의료법체계에 상충된다고 보이고요. 동 조항 7호의 담당의사에도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우리 법률체계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저한테도 의학계나 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 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장관님은 어떠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한의사에 대해서 일반연명의료는 제공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연명의료에는 일반연명의료가 있고 특별연명의료가 있는데 특별연명의료라는 것은 보통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아니면 혈액투석을 하거나 인공호흡기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특수연명의료의 제공인데 그것은 현재 한의사가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의사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렇고 지금 일반연명의료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허용하게 한의사를 추가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동안 말기 암 환자분들이 아주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기 암이나, 요번에 일부 질병을 세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말기에 고통스럽지 않게 행복하게 편하게 돌아가시게 해 드리자는 게 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셔서 조속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이상민** 조속히 지금 넘어온 안대로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신다 이 뜻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저도 여야를 떠나서 오히려 여당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타당하다, 그런데 그것을 여야 합쳐 가지고 대표발의를 해서 그대로 연명하는 게 과연 본인의 행복추구권에 도움이 되는지, 질질 끌어 가지고 가족들까지 더 힘들게 해서 장관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 아니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제가 듣기에는 여야 함께 대표발의해서, 오히려 여당 위원의 설명을 듣고 제가 공감한 바가 있어서 제 견해로는 그냥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를 생각해 봅니다.

○정갑윤 위원 장관님,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에 공청회다 뭐다 다 거쳐서 절차를 다 밟아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다 도출해 냈는데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정갑윤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께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지난번 공청회 때나 토론회 때 이미 다 거론된 내용인데 그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마지막에 소견서 작성할 때 최종 말기 암 환자라는 것을 판단할 때 한 의사를 추가하라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토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물론 감안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암관리법에서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소견서를 쓸 수 있는 게 의사로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루빨리 통과시켰으면 하는 법안이고 이게 시행될 때까지는 한 1년 6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의사협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고 토의를 해 왔었는데 그동안은 한의사협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요번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 사이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로 개정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게 존경하는 정갑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러 가지 저도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 호스피스, 임종 과정에 한의사가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했듯이 암관리법에는 그것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임종 또 완화의료의 과정에서 한의사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복지부장관이.

그런데 이 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고 있는 것조차도 한의사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큰 변화가 오는 것이고요. 한의사협회에서는 와서 정말 아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래서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한 번만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장관님, 한의사회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최근에 말씀은 있으셨는데 저희가 옛날에 논의과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하는데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산소호흡기 이때 판단을 의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연명치료를 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웰 다잉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이 법안이 그런 법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갔는데……

저에게도 한의사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웰 다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의사회가 암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양의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한의로 가서 연명치료를 하는데 그 연명치료의 내용이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호흡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어떻든 이 해석으로 보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면서 특수연명치료 그다음에 일반연명치료를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법안에는 아무리 읽어 봐도 특수연명치료와 일반연명치료 구분이 없어요. 그러

니까 ‘심폐소생술 그리고 산소호흡기 등 연명치료’라고 되어 있어서 ‘등’자에 한의학적인 연명치료가 들어가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조인지 7항인지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의사회 내용을 놓칠 수 있으니 전문위원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이게 무슨 직역 간의 다툼도 아닌데 한쪽을 누르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 전문위원은 그래도 좀 들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게 하는 게 필요하겠단,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만약에 동의가 괜찮으면 전체회의에서 좀 보고 보장할 게 있으면 보장하고 그러고 가면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연명의료는 한의사분들도 할 수……

○서영교 위원 아니면 그 사이라도 가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연명치료는 지금 한의사분들이 쓸 수 없는 기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 법에서는 특수연명치료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연명치료는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통 연명치료라는 게 영양을 공급하거나 무슨 약을 투여하거나 산소를 드리거나 이런 것은 지금 충분히 한의학적으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 되면 자기네가 어렵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여기서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호흡기 등 연명치료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당은 의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특수하게 의료기기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그것을……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특수하게 의료기기를 써야 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그렇지 않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호흡기, 인공…… 호흡을 시키려면 그게 필요해서 기계를 써야 되는데 그 기계를 지금 한의사가 쓸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쓰는 경우만 의사에 한한다’ 이렇게 법안에 되어 있는건가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등 연명치료에 한해서 의사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좀 바뀌었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심태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전문위원께서 들어봐 주라고 했었고요, 왜냐하면 전체 무리가 없게.

그런데 한의사회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한의사회 뭐 다 떠나서 엄연히 존재하는 치료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살펴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사람은 이 얘기를 안 들어줬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심태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법은 두 가지 부분이 분리돼 있던 것을 합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새로 만들어지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암관리법에 있던 걸 호스피스라는 이름으로 이 법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을 보시면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서는 의사들이 하는 결정에 한정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연명의료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이 의사만 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할 수 없는 처치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더 명확하게, 혹시 대통령령으로 한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을 넣을까 봐 ‘한의학적 시술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었고요.

이 부분은 원래 한의사들이 못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못 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만 연명의료 중단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느냐 안 하느냐, 한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느냐의 문제는 이 법의 적용대상 자체가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사분들이 하시는 연명의료 중단만 이 법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걱정하시는 연명치료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부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6항 6호에 보시면 별도로 개념이 규정돼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고 기존에 암환자에 대한 암관리법에서 의사들이 하던 부분과 한의사들이 하던 부분을 그대로 여기에 다 옮겨 났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을까

봐 설명 후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할 수 있는 걸로 집어넣어 놔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법이 기존에 한의사분들이 하던 것을 못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혹시 한의학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법은 이 법에 포섭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의사분들과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의견 교환이 원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서로 얘기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개정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기존에 한의사분들이 하시던 것을 못 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개념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혹시 한의사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생길까 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한의사분들의 권리를 막는 것은 다 제외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것만 의사한테 국한을 해 놓은 겁니다.

○김진태 위원 이제 전문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주 공급자 위주 방식으로 법을 짜깁기해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연명의료라고 해서 모처럼 임종과정, 웰 다잉을 포괄하는 개념을 설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연명의료에 심폐소생술 등 몇 가지 양의가 하는 것만 여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원래 한의사가 못 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간다 이런 발상으로 하면 연명의료의 개념을 확 줄여 놓고 한의사는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면서 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한의사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이 어떤 때는 작은 측면만 포착했다가 어떤 때는 넓은…… 차원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모처럼 이렇게 왔으니까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면 그전에 한의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연명의료에 넣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박탈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침을 놓는다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괄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를 해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우리가 생각했던 애

초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상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배제하고 다 앞으로 가실 수 있게, 지금 연명의료도 한의사분들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걸 결정할 때 이때가 문제되는 거지 한의사분들이 하시던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김도읍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입니까?

○김도읍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상민 아십니까? 이 건만 정리 좀 먼저 하고요.

이 건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지금 빨리 하자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김진태 위원님은 2소위……

○전해철 위원 전체회의에 놔두지요.

○위원장 이상민 전체회의에 남겨 놔요?

○전해철 위원 예.

○서영교 위원 저는 2소위까지는 안 가고, 우선 한의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전문위원에게 토스를 했고 전문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제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조정이……

사실은 한의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는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취지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체회의에 놔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상민 정갑윤 부의장님, 그렇게 할까요?

○정갑윤 위원 전체회의에 두지요.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전체회의에 두고?

○김진태 위원 예.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정갑윤 위원 장관이 설명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이게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정부 쪽하고 의학적 쪽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필요한 법이면 적시에 빨리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의논하셔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의사일정 141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2소위 회부 의견인가요?

○**김도읍 위원** 예, 141항.

○**위원장 이상민**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정책개발원, 별도로 아동정책만 연구하고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개발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금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업무의 중복성, 그로 인한 예산낭비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 아동은 18세 미만이 아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청소년은 9~24세가 청소년인데 이미 우리는 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 파트를 나누어서 아동정책까지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거나 하면 되지, 중첩되는 이유도 있고 또 굳이 아동정책만 개발하는 새로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하니까 2소위에 회부해서 과연 아동정책개발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141항이요.

또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복지부장관님, 143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위원장 이상민** 2소위 회부 의견이신가요?

○**전해철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143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

별법 이것 봐 보세요. 이것 보면 지금 경감을 해주는데,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전해철 위원** 일부 건강보험료 등을 경감해 주는데 보금자리지구 지역주민들은 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농림부 등에서는 하는 게 맞다 하고 행사부에서도 분리과세로 일정 부분 소급을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법으로 이것을 소급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지침을 만들 것 아닙니까? 지침을 만들 때 소급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번에 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되면서 그 특별관리지역도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 같은 경우가 건강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법에 소급해서 지정하는 것까지는 좀—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형평성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광명·시흥이 보금자리지구로 됐다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된 데를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 법은 통과하는 대신 앞으로 지침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장관께서 각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대로 통과하면 될 것 같고요.

154항 국민건강보험법, 장관님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 들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전해철 위원**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진 주택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충분히 협의가 안 돼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 말고 앞에 전문위원이 두 가지 검토한 의견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장관께서 준비해서 2소위

에 주면 2소위에서 잘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건은 2소위 회부 의견이 고요.

○위원장 이상민 백 몇 십……

○전해철 위원 154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장관님 155항 영유아보육법도 지금 전문위원이 포괄위임입법으로서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지적은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것은 저희가 현실에서 보면 보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당뇨병 있는 어린이가 어린이집 같은 데를 갈 때 오면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오는 것을 꺼립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법 취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고할 때 잘 안 보셨나? 영유아의 질병에 관한 것을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질병이란 단어 위에 다 위임을 해 버리면 이게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소위에서 한번……

○위원장 이상민 150……

○전해철 위원 155항입니다. 그래서 154·155항은 2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장관님, 이게 내용상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좀 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저희들이 잘 다듬을게요, 취지에 반하지 않게.

김도읍 위원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까 아동정책개발원 말씀 주셨는데……

○위원장 이상민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동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답변을……

○위원장 이상민 예.

○김도읍 위원 2소위로 넘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상민 그것도 나중에 차관이 오셔서 말씀을 잘해 주세요, 사전에 설명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1월 8일까지가 임시국회니까 조속히 할 것은 또 그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서 할 겁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154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건강보험공단이 임차인의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그 대상이 아파트 거주가 아닌 연립, 단독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연립, 단독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택임대차시장이란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 차원에서 논할 때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종합적인 정책과 아주 예민하게,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임대인의 세원 노출 이런 부분에 걸리기 시작하면 주택임대차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부가 2014년도 6월에 전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154항은 2소위에 회부해서 이런 경우는 국토부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 챙겨 보세요.

○김도읍 위원 아니, 위원장님,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있어요? 2소위 넘기는 겁니까?

○김도읍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몇 항?

○김도읍 위원 176항.

○전해철 위원 176항은 끝났어요. 환노위 끝났

어요.

○김도읍 위원 아, 끝났어요?

○전해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176항은 없는데, 여기에.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126, 127, 128, 130, 131, 132, 133, 134, 137, 143, 146, 148, 151, 153, 155…… 아, 155는 빼고요. 153, 156, 158까지 각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해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124, 125, 129, 135, 136, 138, 139, 140, 142, 144, 145, 147, 149, 150, 152,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각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2소위 회부 안전입니다.

141·154·156, 3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전해철 위원 아니, 155.

○위원장 이상민 155라고 그랬어요. 141·154·155, 3건의 법률안은 2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57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입니까?

○서영교 위원 예, 식품의약처에……

○위원장 이상민 예.

○서영교 위원 지금 할까요?

○위원장 이상민 예, 지금 하세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 식약처장님, 새로 오셔서…… 오신 지 꽤 됐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예.

○서영교 위원 제가 우선 한 가지, 저를 좀 봐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예.

○서영교 위원 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이 있는데 아저씨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거기에 조금 이따가 청년들이 들어와서 밥을 먹었어요. 아저씨들은 갔어. 그런데 거기서 술을 같이 먹고 있었어. 가고 남은 청년들을 보니까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들이 ‘저희 미성년자인데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주인이 술을 못 먹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예, 아저씨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먼저 아저씨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미성년자예요.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들은 나중에 술값, 하여간 이렇든 어떻든 말 안 하고 내고 가면 되는데 ‘미성년자예요’ 그러는 것 보면 의도가 있는 것이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그렇지만 음식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술을 판매하거나 술을 먹게는 하지 말도록 주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아저씨들이 먹고 있는 곳에 잘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요즘은 가게 장사가 아주 잘되진 않아요. 그래서 와서 ‘미성년자인지 보자’ 그랬더니 보여 줬는데 잘 안 보이기도 해. 얼마 전에 한 할머니는 보여 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보고 그냥 팔았어요. 팔고 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중에 변명해 봤자예요. 그래서 ‘이의신청 있으면 이의신청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의신청은 못 하겠고……’, 그리고 할머니는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지역에 호프집들이 꽤 있어요. 우리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호프집에서 일부러 청소년들에게 술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먹일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해야 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애들이 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미성년자인데요’ 이라고 나니까 주인은 또 잘 몰라서 고발했어. 고소했더니 나중에 나만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요.

자, 조그만 가게에서 2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그 집 문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문 닫으라는 소리고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현장에서 너

무 많이 봐요. 주인이 의도적으로 술을 팔려고 하지는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엉겁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청년이 들어와서 담배를 급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마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주고 있는데 좀 이따가 집안의 형이 들어와서 ‘내 동생한테 담배 팔았지?’, 신고했어. 그러면 영업정지가 돼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이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은 살리자. 의도적으로 강박에 의하거나 위조되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고 그래서 법안이 올라가 있던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

이런 상황을 법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안을 빨리 무전취식, 의도하는 미성년자, 그리고 실수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살려 주자, 선량한 자영업자, 나쁜 자영업자가 아니라.

그리고 옆에서 청소년 보내고 배 짜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밝혀질 때는 우리가 2개월 영업정지를 하지 말자. 그래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범위반이 안 되게 벌써 소위에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남겨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 남았어요. 식약처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거기서 찾아 주세요, 저희도 더 찾을 테니까. 너무나 많은 자영업들이 그렇게 해서 2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데, 남편은 그러지요. ‘누가 너보고 가서 장사하라고 그랬냐?’ 아니면 동네에서 ‘저 집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대’, 이미지 나빠지고 2개월 뒤엔 영업정지예요. 웬만한 호프집은 보니까 그냥 자영업자가 다 동업을 했어요. 그리고 망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여가부하고도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지위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위에서 하는데 식약처에서 애매해 가지고 계속 통과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오래 됐습니다. 3년 돼서 여가위와 조절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선량한 자영업자를 범죄자 만들지 않게 방법을 찾아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자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자세한 지침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게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찾아내셔야 돼요. 스스로 자꾸 찾아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지만, 그래서 올린 건데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법안으로 해결을 할 건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자세히 들어가서 억울한 영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또 현안질의, 답변 끝내겠습니다.

두 분 노고 많으셨고, 두 기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 많았습니다.

잠시 5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정회되었던 회의를 다시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사정은 그래도 자꾸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 진행이 원만히 안 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계신 위원님들 제가 그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노철래 위원님, 임내현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나머지 위원님들도 오셔서 하셔야지 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 진행이 안 되면 되겠나 싶습니다. 끝까지 계셔야지요.

그리고 지역 사정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그렇지만 주어진 소임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가서 유권자들한테 잘 했으니까 지지해 달라는 호소를 할 수 있지요.

하여간 학교 다닐 때 보면 결석한 친구들 때문에 매일 출석하는데도 선생님한테 매일 출석한 사람이 꾸지람 듣고 욕먹고 그랬습니다.

23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2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6시46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두 분 오래 계셨는데요, 235항·236항, 2건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유경준 통계청장님, 김상규 조달청장님 두 분 출석하셨고요.

이게 정부안인가요? 대안이에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고.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5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계법상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포함하고 통계 미공표 승인 내역을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새로운 통계의 요건에 대하여 그 기준을 예시하도록 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6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축물자의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충돌하는 개정 조문의 위치를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의결이 안 되네요.

수석전문위원은 빨리 위원님들 오셔서 의결정족수 채우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두 분하고 두 기관 소속 공직자들은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 장관님들 다 출석하시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교육부의 황우여 부총리도 출석을 하셨고 정종섭 장관도 출석하셨는데 딱 한 분 기재부장관님만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출석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다하시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 급한 법 두세 건 있다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저도 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따 상황 봐서 두세 건 급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지금 법무부장관님만 오십니까? 법원은 안 오시나요, 박병대 처장님?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님 출석하고 계시고, 일단 238항부터 251항……

감사원장님은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바로 올라오실 겁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에 국방부장관님은요? 안 오세요?

238.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황주홍·이개호·박민수·조정식·김광진·김상희·강창일·신정훈·박남춘·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23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부좌현·박남춘·김광진·김우남·김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계속)

24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이이재·정갑윤·이채익·박창식·강석호·길정우·이만우·정용기·장윤석 의원 발의)(계속)

- 2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김윤덕·오영식·이찬열·김춘진·윤관석·배재정·이원욱·부좌현·민홍철·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24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오영식·이찬열·김춘진·윤관석·배재정·이원욱·부좌현·이춘석·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24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철우·문대성·신의진·이재영·김희선·김제식·김진태·권성동·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24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 245.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부좌현·박남춘·김광진·김우남·김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계속)
- 24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이개호·김우남·신경민·배재정·조정식·김경협·김윤덕·안규백·오영식 의원 발의)(계속)
- 24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248.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24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주승용·김영록·최규성·부좌현·홍문표·강동원·김춘진·강기정·김종태 의원 발의)(계속)
- 25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배기운·윤관석·박원석·정진후·심상정·김제남·장하나·김재연·황주홍·진성준·정성호·김기식·최원식·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25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16시50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법사위 고유 법안입니다. 238항부터 251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38항부터 251항은 1소위 통과한 거지요? 그러면 1소위 위원장님이신 이한성 위원님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이한성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2건의 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사용을 위하여 현행 ‘통리’를 ‘총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배심원 자격의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윤덕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하는 전자보증의 경우는 신중한 보증계약 체결을 도모하고자 전자보증을 금지한 개정 민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이미 거래 업계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여 보증업무의 비효율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사법 관계에서 외국인의 행위능력에 대해 민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민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한정후견개시 및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및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심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북한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소송절차, 비송사건절차에서 제출 서류의 본인 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서명이 허용되고 있는 실무의 관행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우남 의원과 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상명령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가해자 등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상신청서 부분을 송달할 때나 배상명령을 각하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의 신원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만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서영교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결정족수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35항, 236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235, 236은 전문위원이 수정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수정 보고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소위를 통과한 고유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38항, 240, 247, 248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9·245·2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1항, 242항, 24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244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9항, 25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25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강석훈·이채익·이우현·류지영·이병석·전해철·노철래·송영근·김진태 의원 발의)

(16시58분)

○위원장 이상민 333항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필요해서……

박병대 처장님, 이것 빨리 되어야 된다면서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인천가정법원이 내년 초에 개원 예정인데 경과규정이 조금 잘못 규정이 되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천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는 사건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갑윤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가까이 당겨서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인천가정법원이 내년 3월에 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써 지금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가사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넘긴 사건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경과규정에 그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것을 개정하기 위한 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위원장 이상민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내년 초부터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그래서 33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백재현·김윤덕·이원욱·전정희·안규백·조정식·이개호·홍영표·박완주·진성준·배재정 의원 발의)

2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박주선·이개호·부좌현·노웅래·조정식·이찬열·김태원·김

광진·김우남 의원 발의)

2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부좌현·이개호·황주홍·안규백·정성호·김성곤·강동원·유승희·최동익·노웅래·정청래·박남춘·박민수 의원 발의)

2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부좌현·오영식·주승용·이원욱·최규성·윤후덕·인재근·홍영표·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11)

2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權垠希 의원 대표발의)(權垠希·이목희·안규백·황주홍·박남춘·전해철·백재현·김성곤·신경민·오제세 의원 발의)

2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부좌현·이원욱·최규성·오영식·윤후덕·최민희·인재근·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51)

2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박민식·이운룡·김광진·류지영·김진태·김희선·송영근·이우현·서청원 의원 발의)

2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박명재·정갑윤·홍지만·유재중·김태원·이인제·류지영·박윤옥·정문헌·강석호·정희수·조명철·김성찬 의원 발의)

26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유승우·이완영·김상훈·이명수·송영근·김명연·김기선·이종진·김을동 의원 발의)

2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개호·김성곤·변재일·조정식·이윤석·최규성·강창일·진성준·김현 의원 발의)

2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홍익표·이개호·조정식·김광진·이목희·박남춘·김성곤·김경협·노영민 의원 발의)

263.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최동익·진성준·

- 윤관석·최원식·부좌현·김민기·박남춘·황주홍·홍종학·김영록·백재현·우윤근·최민희 의원 발의)
26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박남춘·신학용·신경민·이개호·안규백·유승희·權垠希·윤관석·박지원·김광진·이종걸 의원 발의)
26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이춘석·서영교·윤후덕·백재현·유성엽·이찬열·박범계·유승희·민홍철·전해철·김기식·최민희 의원 발의)
26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민병두·윤후덕·김민기·정호준·주승용·강기정·조정식·이개호·노응래·이찬열·김용익 의원 발의)
26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박민식·정수성·경대수·김장실·박대동·이학재·강기윤·민병주·류지영·전하진·김희국 의원 발의)
2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임내현·부좌현·이춘석·김광진·김민기·박홍근·박민수·박남춘·김현 의원 발의)
2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부좌현·이원욱·최규성·오영식·윤후덕·최민희·인재근·김광진 의원 발의)
2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손인춘·전하진·노철래·이재영·박대출·하태경·이종진·최봉홍·안효대·정희수 의원 발의)
2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윤후덕·서영교·정호준·추미애·최원식·이언주·김용익·김광진·오영식·우원식·전해철·이춘석·박원석·이상직·진선미·박광온·權垠希·안철수·유은혜·정성호·인재근 의원 발의)
2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조명철·김성찬·이완영·홍지만·홍철호·류지영·김정록·박윤옥·김기선·박대동·이운룡·김상민 의원 발의)
- 원 발의)
2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동완·정희수·나성린·이한성·박맹우·신상진·유재중·염동열·이만우 의원 발의)
2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박명재·이철우·이명수·서상기·황인자·박윤옥·양창영·송영근·이현재 의원 발의)
2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윤덕·강창일·박홍근·안민석·김광진·김우남·김동철·유성엽·김민기·노응래 의원 발의)
27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류지영·황영철·권성동·이노근·김태흠·김종태·안홍준·이강후·황인자 의원 발의)
27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이개호·김성곤·신경민·박홍근·이목희·강창일·전정희·최동익·안규백 의원 발의)
2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신의진·이한성·류지영·강기윤·조명철·홍지만·문정림·박윤옥·민현주·이명수·신경림 의원 발의)
2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경협·윤관석·이상직·정세균·이석현·노영민·진성준·김기식·송호창·부좌현·한기호·이언주 의원 발의)
2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이윤석·서영교·김경협·한정애·이상민·이강후·이언주·박덕흠·권성동·홍종학·임내현·김영주 의원 발의)
2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윤명희·이한성·이채익·강기윤·박대동·정갑윤·김태호·이만우·김동완 의원 발의)

- 28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이인영·진성준·윤관석·최규성·김승남·진선미·송호창·이개호·김현미·이목희·우원식 의원 발의)
- 28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영록·김윤덕·민병두·신문식·이개호·전정희·주승용·최규성·이상직 의원 발의)
- 28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남춘·김민기·진선미·최민희·박지원·홍중학·김용익·김현·윤후덕·부좌현·설훈 의원 발의)
- 28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만우·김명연·정미경·홍문종·유의동·전하진·장정은·홍지만·이운룡 의원 발의)
- 28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이인영·진성준·윤관석·최규성·김승남·진선미·송호창·이개호·김현미·이목희·우원식 의원 발의)
- 28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이철우·경대수·여상규·신성범·양창영·권성동·류지영·김용태·유승민·이한성 의원 발의)
- 2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조정식·이개호·주승용·김동철·임내현·송호창·이종걸·김관영·강기정 의원 발의)
- 2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김영록·김민기·주승용·조정식·이개호·강기정·김광진·민병두·황주홍·이상직 의원 발의)
- 2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부좌현·황주홍·최재성·이개호·노웅래·오영식·김광진·정세균·박홍근·우윤근 의원 발의)
- 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경협·윤관석·정세균·이석현·노영민·진성준·백재현·송호창·부좌현

의원 발의)

- 293.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종진·신경림·이명수·신의진·김명연·김재원·김제식·김장실·권성동·강기윤 의원 발의)
- 29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노웅래·부좌현·서영교·유승우·주승용·최봉홍·홍문표·홍지만·황주홍 의원 발의)
- 29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백재현·박광운·서영교·이원욱·오영식·김성곤·안규백·전해철·이춘석 의원 발의)
- 29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정미경·송영근·이만우·손인춘·조경태·홍철호·이완영·박성호·류지영·주영순·신경림·정병국·유승우·강석호 의원 발의)
- 298.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7시00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252항부터 298항까지 4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민간 분야 부패범죄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의 경우에도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범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를 부패범죄에 추가하는 한편, 은행법 등이 개정되어 별표 부패범죄를 현행법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셋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비교도대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3건의 법률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신 분이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이외에 황찬현 감사원장님, 다음에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네 분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상 4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99.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박홍근·부좌현·안규백·이목희·전해철·윤후덕·조정식·전순욱·김상희·김성곤·김광진 의원 발의)

30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조경태·안규백·민홍철·박홍근·최동익·김성곤·부좌현·이개호·강창일 의원 발의)

30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개호·조정식·박홍근·백군기·부좌현·강동원·유승희·양승조·정세균 의원 발의)

3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광진·김우남·박홍근·부좌현·서영교·송호창·이원욱·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30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강기정·김기준·김영환·김현미·남인순·오영식·우원식·유은혜·윤후덕·이개호·이학영·전순욱 의원 발의)

3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재영·김진태·황인자·권성동·홍일표·김희선·김제식·이철우·장윤석 의원 발의)

30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류지영·이한성·황영철·권성동·이노근·김태흠·김종태·안홍준·조명철 의원 발의)

30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오신환·주승용·장윤석·박주선·이채익·정희수·정미경·유승희·황주홍 의원 발의)

30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8.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이장우·심재철·김현숙·김용태·류지영·정미경·이만우·윤명희·하태경·문대성·이재영·박덕흠·손인춘·전하진·이노근·정갑윤·양창영·김기선·서청원·염동열·김상훈·심학봉·김종훈·홍철호·최봉홍·강석호 의원 발의)

3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이병석·노철래·유의동·황인자·이우현·김도읍·송영근·강석훈·심재철 의원 발의)

3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안규백·손인춘·윤후덕·부좌현·김광진·김태흠·송영근·강길부·이찬열·김성찬 의원 발의)

3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김성곤·김우남·김윤덕·박지원·박혜자·신계륜·유인태·윤관석·이개호·이윤석·이원욱·이한성·장병완·전해철·정청래·정호준·조경태·조정식 의원 발의)

3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부좌현·강기정·배재정·박남춘·김민기·장하나·최규성·김영록·이원욱 의원 발의)

31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동철·김성곤·남인순·박민수·박원석·이개호·이원욱·이자스민·이찬열·홍일표 의원 발의)

31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서청원·이현재·류지

영·황우여·박원석·길정우·원혜영·주호영·윤재옥·송영근·안상수·한선교 의원 발의)

31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인재근·정희수·이한성·김태원·박원석·강길부·원혜영·박인숙·김상훈 의원 발의)

31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서영교·김현·이개호·장병완·정청래·김민기·박홍근·김태년·최규성·신기남·임내현·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31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개호·유기홍·박민수·정호준·우상호·홍의락·최민희·최원식·백재현 의원 발의)

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3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정청래·이개호·김기준·박남춘·황주홍·김성곤·정호준·이해찬·안규백 의원 발의)

3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박남춘·이개호·조정식·신경민·황주홍·이춘석·윤관석·정성호·이상민 의원 발의)

3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박원석·이개호·정진후·심상정·김제남·홍영표·신경민·서영교·최동익 의원 발의)

3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이학영·정성호·서영교·전해철·박범계·민병두·남인순·조정식·임내현 의원 발의)

323.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정청래·이춘석·서영교·안규백·신정훈·전해철·이원욱·김성곤·박광온 의원 발의)

32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안철수·서영교·부좌현·이찬열·황주홍·김경협·윤후덕·이상직·박주선 의원 발의)

3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박지원·이개호·홍종학·이미경·김성곤·김동철·강기정·장병완·박혜자 의원 발의)

3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이학영·백균기·김성곤·서영교·전해철·최원식·박범계·민병두·남인순 의원 발의)

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이인영·진성준·윤관석·최규성·김승남·진선미·송호창·이개호·김현미·이목희·우원식 의원 발의)

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안규백·서영교·설훈·부좌현·이춘석·신정훈·이원욱·김성곤·노영민·정청래·전해철·홍일표 의원 발의)

32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서영교·김현·이개호·장병완·정청래·김민기·박홍근·김태년·최규성·신기남·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33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백재현·박광온·서영교·이원욱·오영식·김성곤·안규백·전해철·이춘석 의원 발의)

33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서영교·김현·이개호·장병완·정청래·김민기·박홍근·김태년·최규성·신기남·임내현·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33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현승·김상민·박창식·염동열·이우현·김태원·서용교·윤상현·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91)

3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언주·이춘석·김현미·안규백·윤후덕·변재일·박광온·김관영·김경협 의원 발의)

3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하태경·김광립·이학재·주영

- 순 · 이현승 · 이우현 · 이노근 · 박성호 · 강동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81)
- 3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김제식 · 김기선 · 이강후 · 김성찬 · 박맹우 · 신경립 · 민현주 · 이에리사 · 이종배 · 박윤옥 · 이명수 · 김명연 의원 발의)
- 3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창식 · 이노근 · 염동열 · 강은희 · 이채익 · 이강후 · 김제식 · 유의동 · 경대수 의원 발의)
- 33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김성곤 · 김춘진 · 박범계 · 송호창 · 신정훈 · 이개호 · 주승용 · 최규성 · 황주홍 의원 발의)
- 34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정미경 · 이한성 · 심재철 · 조명철 · 유승민 · 홍철호 · 신의진 · 김태원 · 정병국 · 손인춘 의원 발의)
- 34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재영 · 이노근 · 이이재 · 김제식 · 류지영 · 윤명희 · 이장우 · 김태원 · 이완영 의원 발의)
- 34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박민수 · 인재근 · 정청래 · 이개호 · 김성곤 · 이미경 · 전정희 · 윤후덕 · 박남춘 의원 발의)
- 34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한기호 · 문정립 · 강기윤 · 윤후덕 · 안규백 · 송영근 · 김태원 · 조명철 · 이강후 의원 발의)
- 3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재영 · 홍철호 · 이이재 · 이상일 · 김제식 · 류지영 · 윤명희 · 염동열 · 강은희 의원 발의)
- 3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부좌현 · 오영식 · 주승용 · 이원욱 · 최규성 · 윤후덕 · 인재근 · 홍영표 · 박주선 의원 발의)
- 34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정청래 · 신경민 · 이목희 · 이개호 · 김성곤 · 배재정 · 정호준 · 부좌현 · 박남춘 의원 발의)
- 34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안규백 · 서영교 · 설훈 · 부좌현 · 이춘석 · 신정훈 · 이원욱 · 김성곤 · 노영민 · 정청래 · 전해철 · 홍일표 의원 발의)
- 34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 · 서용교 · 김진태 · 전하진 · 홍일표 · 강석훈 · 김을동 · 이자스민 · 이종훈 · 권성동 의원 발의)
- 3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립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 35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이개호 · 신경민 · 강창일 · 이원욱 · 노영민 · 정청래 · 전해철 · 황주홍 · 김기준 의원 발의)
- 3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이종진 · 신경립 · 이명수 · 김명연 · 김재원 · 김제식 · 김장실 · 김정록 · 권성동 의원 발의)
- 35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부좌현 · 오영식 · 주승용 · 이원욱 · 최규성 · 윤후덕 · 인재근 · 홍영표 · 박주선 의원 발의)
- 3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윤후덕 · 서영교 · 정호준 · 추미애 · 최원식 · 이언주 · 김용익 · 김광진 · 오영식 · 우원식 · 전해철 · 이춘석 · 박원석 · 이상직 · 진선미 · 박광온 · 權垠希 · 안철수 · 유은혜 · 정성호 · 인재근 의원 발의)
- 35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이석현 · 문재인 · 홍영표 · 김명연 · 전해철 · 박지원 · 정진후 · 신기남 · 한정애 의원 발의)
- 35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 · 주영순 · 이한구 · 박맹우 · 윤명희 · 김기선 · 정병국 · 강기윤 · 김태환 · 박상은 · 이종배 · 김영우 · 류지영 의원 발의)
- 3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원혜영 · 이개호 · 이원욱 · 전정희 · 박남춘 · 김광진 · 노영민 · 윤후덕 · 전병헌 의원 발의)

35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이원욱·오영식·부좌현·김춘진·유성엽·신정훈·이찬열·정호준·임내현·배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01)
36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이원욱·오영식·부좌현·김춘진·변재일·윤관석·이찬열·황주홍·배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92)
3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노영민·진성준·김윤덕·이원욱·전순옥·조정식·김현미·윤관석·배재정 의원 발의)
36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주승용·유승희·백재현·조정식·양승조·신경민·김민기·김승남·황주홍 의원 발의)
3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유승우·신경림·이한성·홍일표·정용기·함진규·여상규·박민식·강길부·정병국 의원 발의)
36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강기정·김기준·박홍근·서기호·서영교·신경민·우원식·이개호·전해철 의원 발의)
36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이한성·이석현·홍일표·권성동·나성린·주호영·나경원·길정우·김희선·박대동 의원 발의)
36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서영교·김현·이개호·장병완·정청래·김민기·박홍근·김태년·최규성·신기남·임내현·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36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37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하태경·홍철호·정성호·정갑윤·정문헌·나성린·신의진·김태원·권성동 의원 발의)
37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하태경·홍철호·정성호·정갑윤·정문헌·김태원·나성린·신의진·권성동 의원 발의)
37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개호·김성곤·이미경·전정희·윤후덕·박남춘·최원식·박민수·인재근 의원 발의)
37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안규백·서영교·설훈·부좌현·이춘석·신정훈·이원욱·김성곤·노영민 의원 발의)
37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홍문표·박주선·이개호·정세균·정청래·이원욱·박홍근·윤관석·이한성·홍익표·안민석·김윤덕 의원 발의)
37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강석호·김태원·김희국·박덕흠·신상진·이노근·이현승·함진규·이우현 의원 발의)
3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이개호·유승희·전병헌·박영선·조정식·전정희·민홍철·강동원·김성곤·이목희·송호창 의원 발의)
3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부좌현·오영식·주승용·이원욱·최규성·윤후덕·인재근·홍영표·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10)
3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3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민병두·김영록·신정훈·이종걸·박광온·강동원·이학영·안민석·김현미·정호준 의원 발의)

3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정갑윤·권성동·나성린·박대출·안홍준·노철래·김태원·김재경·정희수·신성범·최봉홍·황인자 의원 발의)
3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 발의)(이연주·유승희·이개호·이윤석·신기남·김광진·박수현·김동철·김영록·김상희 의원 발의)
3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이명수·김을동·박윤옥·이종진·윤명희·김명연·정희수·김기선·장정은·김제식 의원 발의)
3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노영민·부좌현·윤후덕·주승용·이원욱·최규성·오영식·인재근·강기정·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99)
3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민병두·강기정·김영환·김기식·신학용·김기준·이상직·인재근·신경민·김관영 의원 발의)
3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 발의)(김기식·강기정·김영환·김기준·이개호·오영식·윤후덕·전순옥·김현미·우원식·이학영·남인순·유은혜 의원 발의)
38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 발의)(백군기·유대운·안규백·윤후덕·부좌현·김태흠·강길부·이찬열·김광진·신경민 의원 발의)
38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홍익표·김기준·박주선·김승남·윤관석·변재일·이원욱·김영록·박광운·김춘진 의원 발의)
38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 발의)(송영근·정병국·류지영·정미경·한기호·최봉홍·정용기·손인춘·김종태·정갑윤 의원 발의)
39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1.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이석현·이연주·유인태·이춘석·김현

미·안규백·윤후덕·변재일·임수경·박광운·김관영·우윤근 의원 발의)

39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이채익·이노근·장윤석·이종진·서용교·이철우·이강후·이만우·홍지만·홍문중 의원 발의)

39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 발의)(부좌현·김윤덕·이개호·강창일·이찬열·이원욱·노영민·정청래·전해철·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419)

39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 발의)(부좌현·원혜영·정청래·이개호·전해철·정성호·이원욱·전정희·박남춘·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62)

397. **군용품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주호영·이학재·정문헌·김도읍·김광림·이종배·박성호·안홍준·이만우·황인자·서상기·송영근 의원 발의)

3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백재현·이개호·황주홍·정청래·오제세·최원식·박범계·노웅래·김광진·유성엽·최동익·이상직 의원 발의)

(17시04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299항부터 398항까지 중 333항을 빼 나머지 모두를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국방부장관님도 제안설명할 게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장 이상민 감사원장님도 있나요?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이 제출한 법안은 없습니다. 의원입법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없고요, 법원도 제안설명할 건 없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법무부장관님하고 한민구 장관님하고 두 분이 제안설명해 주시고 각 해당 순번에 따라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이 먼저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몇 항까지 상정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전부 다 했습니다, 398항까지.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이한성 간사와 사회교대)

첫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변호사시험법에 명백한 성적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 변호사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하되 변호사의 실무연수기간, 시험관리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둘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납부에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배려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의 분할납부·징수유예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를 가능하도록 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의 절차를 준용하던 과태료 징수절차를 과태료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보호기관 내 인권친화적인 수용환경을 조성하고 개별처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가 되도록 하고 생활실은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령에 따른 분리수용 기준을 삭제하고 정신적·신체적 상황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분류 처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규율위반행위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소년의 규율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효율적 교화가 가능하도록 반성문 작성,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정지 등 총 5종의 징계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 3건의 법률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현재의 신분관계가 표시되는 증명서 명칭을 상세증명서로 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2명의 보증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 인우보증제도가 신분세탁 등에 악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을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고 ‘제각’을 ‘제거’로, ‘구거’를 ‘도랑’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저명한 민법 학자 및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와 국어 학자 등이 심도 있게 연구하여 마련한 안으로 완성도가 높아 국회 단계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를 반영하여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 3건의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성** 법무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법률안은 군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군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성** 국방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법무부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입니다.

미처 제안설명 못 드린 법률안이 있어서 다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반영하여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취지로서 신탁관리인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취지로서 무능력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분점포의 성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구분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제한되어 있는 구분점포의 용도를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 구분점포를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구분점포의 성립이 보다 용이해져 집합건물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4건의 법률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성** 장관님, 이제 다 하신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위원장대리 이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399.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12분)

○**위원장대리 이한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9항을 상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9항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성** 아주 간략하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의사일정 252항부터 298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52항부터 제258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52항 오영식 의원안은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법상 이미 도입되어 있는 영상녹화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53항 황주홍 의원안은 국가 관련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54항 김민기 의원안은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친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나 재심청구권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절차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성**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내용이 좀 기니까 그냥 서면으로 우선, 어차피 1소위 같 테니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회의의 경제를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성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위 심사 때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4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한성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문 있는 위원님들……

임내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현 위원 필요하면 법률에 대한 것 끝나고도 좋은데, 제가 각각 법무부장관하고 감사원장한테 현안질의가 있어서, 혹시 다른 걸 먼저 하시고 하시든가……

○위원장대리 이한성 대체토론, 법안과 관련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임내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내현 위원 그러면 법무부장관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권 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이 1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이지요,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청탁자—최경환 부총리를 말할 것입니다—의 외압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신문 보도에서 봤습니다.

○임내현 위원 권 전 실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2013년 중진공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핵심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부총리 쪽과 중진공 관계자들이 말을 맞춘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도 최 부총리에 대한 수사는 외면한 채 이번 사건을 자신과 박철규 전 이사장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입니다.

권 전 실장은 여섯 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최 부총리가 외압의 실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최 부총리의 인턴을 중진공에 채용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간부 J씨는 지난달 11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에 권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정 모 비서관—이것은 최경환 부총리의 정 모 비서관을 뜻하는 겁니다—이 가서 절대로, 이것은 검찰에 가서 한 말인 걸로 알려졌는데 가서 절대로 채널을, 그러니까 채용 청탁의 채널인가 봐요. 채널을 지역구로 해 달라, 그러니까 최 부총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가 있는 데서 얘기를 했다, 이쪽도 다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도 지난 10월 권 실장과 만나 ‘최 부총리가 살아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 보도된 중진공 직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2014년 11월 19일에 중진공 직원이 부총리실에 연락하여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채용 의혹 건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 또 같은 해 11월 21일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중진공 이사장과 부총리가 만나시도록 주선해 드렸다는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탁 의혹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최 부총리 측이 감사와 수사를 방해한 또는 거기에 개입한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도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채용 의혹을 받는 황 모 씨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성적이 2299등인데, 그런데다가 면접 성적도 나빠서 중진공에 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최 부총리가, 이것은 36명 안에 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다녀와서 또 그걸 채용했어요. 그걸로 봐서 외압을 가한 것이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최 부총리가 황 씨의 합격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부총리는 아직 입건도 되지 않고 전혀 소환할 기미도 없습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앞서 처리한 사건과 큰 차이가 있어요. 검찰이 지난 5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이 총장을 지냈던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뇌물 등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감사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감사원 역시 부실감사에 또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증진공 감사인 이영애 전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과 노래방에서 만나 박철규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다, 임기에 맞춰 퇴임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겠다고 전화까지 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김영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영애 증진공 감사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입건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지요. 그리고 김영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거기에다가 직무유기까지 해야지요.

지금 진술하고 있는 증진공 관계자들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대가도 없이 상관의 지시에 따라 부정 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진술이 거짓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 채용에 대한 전모가 언론을 통해서 거의 다 나왔고 이처럼 관계자가 6건 보도자료까지 주니까 이렇게 쉬운 수사는 없어요. 지금까지 역대 가장 쉬운 수사인데 이것도 못 한다면 굉장히 무능하거나 아주 내놓고 봐주는 거예요.

지난번 장관께서나 이번 총장도 과거와는 달리 정말 중립적으로 잘 하겠다고 해서 큰 이의를 달지 않고 법무부장관도 통과를 시켰고 검찰총장도 과거 전례 없이 말이지요, 문제는 있으나 잘 한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지 않고 해 줬거든요.

하루빨리 이 사람들을 소환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국민적인 의혹을 꼭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질의가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한성** 다음에 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한성** 다음 전해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지금 빨리빨리 의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왕에 1소위 의결됐으니까 좀 질의할게요.

중수부를 부활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중수부를 부활하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TF를 만든다는 보도는 뭐지요, 반부패 TF?

○**법무부장관 김현웅** TF하고 중수부하고는, 만약에 TF가 만들어진다면 해도 중수부하고는 아마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은 다를 겁니다.

○**전해철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은 정확히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 TF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정확한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언론보도는 추측성 보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해철 위원** 그러면 TF 만드는 것이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확정적으로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해철 위원** 저는 굉장히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장관께 보고를 안 했다면 아마 대검에서도 확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개연성 있게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또는 미리 대검에 의사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수부 폐지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으로 했고, 그 폐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폐지를 했던 건데 나오는 것 보면 반부패 TF와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한다면 그것은 특임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반부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전에 중수부가 했던 것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름만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기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설치되고 나서 장관께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훨씬 더 효과가 없는데 마침 아직 방침이 결정되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장관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런 어떤 시도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철회돼야 되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각별하게 유의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성**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혹시 국방부장관님한테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국방부장관님 사정이 계신다니까 미리 퇴장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국방부장관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임내현 위원님 이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법무부장관님, 누가 봐도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카톡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당사자는 한 번도 불려서 소환조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절차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께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언제나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야권은 그냥 당해요. 야권은 그냥 당하고, 보세요.

김재윤 의원이나 아니면 신계륜 의원이나 신학용 의원, 돈 줬다고 하는 김민성 구속수사 했나요? 그러지 않고 안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상황이 엉뚱하게 가고 있고요.

그런 사람은 왜 구속수사 안 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기소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또 여기서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왜 권력자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문제 제기한 사람만 수차례 소환조사 해서 내부 문제만 찾아내고 있는지, 이것 그냥 딱 보세요. 공정하다고 보이십니

까?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은 그냥 탁탁 쳐 나가고, 왜 한 번도 소환을 못 하고 있지요? 왜 한 번도 문지를 앓고 있지요?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중수부 검토는 또 됩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됩니까?

법무부장관께서 가장 잘 할 줄 알았어요, 저희는 중립적으로. 권력이 있어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쁜 권력들을 쳐내 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야당은 치고 이래저래 발목 묶고 다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나도 수사를 안 하고, 저희도 같은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제대로 수사해야지요, 검찰이. 장관께서 뭐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게 중립적이고 투명한 것 같으세요, 아까 이야기에?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한 사람 보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서영교 위원** 왜 사실이 아닌 걸 그 사람이 꼬집어내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러니까 그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영교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권력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그리고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때가 언제입니까? 그 전부터 해서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중수부 이야기는 됩니까? 중수부 부활 이야기는 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수부가 부활한다는 것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듣지 못했으면 이 기사는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언론에서……

○서영교 위원 기사 보고 확인은 했습니까? 기사를 봤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글썄, 제가 확인을 해 봐도 중수부 부활이라는 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중수부 부활이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중수부 부활은 아닌 것으로……

○서영교 위원 그러면 중수부 부활이 아니면 어떤 정도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언론 내용은 뭘 TF팀을 구성한다는 그런 보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정적이거나 정확한 것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TF가 구성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언론에 그렇게 나서, 저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보고하라고 하시고 알아는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나왔을 텐데 그러면 빨리 알아보셔야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같은 날은 확인해 갖고서 답을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법무부장관을 믿고 있고, 어디에 치우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법무부장관께서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성 수고하셨습니다.

임내현 위원님, 더 추가로 질문하신다는 거지요?

○임내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한성 하시기 전에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님도 사정이 계시는 모양인데 처장님께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퇴실을 양해해도 어떻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감사원장님도……

○위원장대리 이한성 감사원장님은 하셔야 되니까.

박병대 행정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다녀가십시오.

그러면 임내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내현 위원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옆에서 이미 들으셨습니까마는 결국 지금 최부총리 인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을 넘어서 감사 무마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른 직무유기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중진공 인사 담당 권 모 실장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불공정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해 기관장과 함께 저를 사건의 피의자이자 정점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보도를?

○감사원장 황찬현 기사가 난 것은 봤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렇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감사결과보고서에 최경환 부총리를 적시 안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2290여 등짜리를 36등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전자기록을 조작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범죄가 너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의뢰라는 것은 되거나 안 되거나 의문이 있을 때 그건데, 이 사람들의 행태는 이걸 고치고 고치고 수없이 고쳤는데……

우선 그것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걸 고발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볼 때는 수사의뢰 할 일이 아니라?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채용비리, 점수 조작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고발하는 경우에는 이런 행위와 그것이 금품수수하고 연계되는 경우에……

○임내현 위원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지요. 지금 전자기록을 딱 만들어 놔는데 그걸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범죄인데 돈이 안 들면, 안 쓰면 그걸 고발 안 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랬다면 다 잘못된 관행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나는 과거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몰

상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시해 주고, 과거에 했던 분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결과가 아닌가 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요.

범죄가 확실하면 고발을 해야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수사의뢰 한 것도 잘못된데 수사의뢰를 하면서도 핵심적인 인물인 박철규 전 이사장 등이 두 사람을 또 누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 부분은 다 진술이 되어 있는데도 자료를 저 밑에다 넣어 놨으니,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알 수 없고 나중에 하면 ‘그 밑에 있었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번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014년 11월 20일 ‘부총리실에 빨리 보고를 해서 감사원장, 사무총장에게 연락이 가 수습될 수 있도록 이미 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부총리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전혀 없습니다.

○**임내현 위원** 거기는 했다고…… 아니, 그런 의혹이 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날인 2014년 11월 21일 모 씨에게 ‘오늘 3시 30분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나고 집무실에서 이사장님이 부총리를 만나시도록 긴급 주선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들어 보셨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일부 언론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임내현 위원** 이때 언론에서 또 2014년 12월 27일 중진공 인사부서 소속 모 씨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감사님께서 어제 사무총장이랑 저녁식사, 노래방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형사 고소는 물론 문제없이 임기에 맞춰 퇴임하시는 것으로 하셨다고 그 약속을 직접 본인에게 하라고 해서 감사님이 사무총장님을 이사장님과 전화 연결시켜 줬다고 합니다’

아까 2290등을 35등으로 했다는 것과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국 때, 극도의 부정부패가 만연할 때에 하는 짓이지요. 감사 대상이 될 사람을 어떻게 통화를 해 가지고 형사책임, 고발은 물론이고 퇴임할 때 안전하게 한다고 얘기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다행히 지금은 나왔습니다마는 중진공 전 감사였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향응 접대, 식사하고 둘이 노래방을 또 갔다, 거기서 전화를 했다, 이건 세계적으로 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럴 때입니까? 이런다면 이런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을랍니다. 물어보면 또 탄소리 하실까 봐.

원장, 감사원의 원훈은 ‘바른 감사, 바른 나라’인데 이렇게 청탁 나라로 빠진다면 참 이 부분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뇌물죄, 수수 혐의 많은데 김영호 전 사무총장은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할 생각입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임내현 위원** 그러면……

○**감사원장 황찬현** 저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 주시길요.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 또는 일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조사 단계에서 나온 이야기보다는 맞든 틀리든 새로운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감사원장 황찬현** 그래서 몇 가지 해명……

○**임내현 위원** 아니아니, 그런데……

○**감사원장 황찬현** 제 이야기도 좀 들어 주시길요.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발을 금품수수 있는 경우 저희들이 해 온 것은 재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임내현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어떻게 해요.

○**감사원장 황찬현** 시간 이미 다 지나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내현 위원** 아니, 지금 한 페이지가 남았어요.

○**위원장대리 이한성** 정리하시지요.

지금 산자위 안건 이거 해 가지고……

○**임내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검찰수사만 볼 게 아니라 감사원이 새로운 문제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감사원장 자신이 직무유기 문제가 나와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234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한성 간사, 이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처리하지 않으면 사퇴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탄핵 문제가 나오고 나중에는 본인 자신의 직무유기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답변 겸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로서는 고발과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가 있으면 고발해야 된다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고발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거나 수사단서에 지나지 않는 것은 실제로 그게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엄격히 그것을 처리하고 하는 것은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전 사무총장이’ 그 부분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것이 전임 사무총장이 당시에 공공기관 감사 포럼에 참석했다가 뒤풀이로 식사 후에 노래방을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언질을 주고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만은 그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나 이런 데서 밝혀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제기하셨고 합시다라는 이제는 저희들 손을 떠나서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점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되셨습니까?

다음에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1~2분만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노철래 위원** 최경환 부총리가 인사 청탁한 게 지금 지난 국정감사 이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이 과정인데 대한민국 검찰이 인사 청탁 하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3~4개월을 수사 중이다, 수사하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철래 위원** 조만간 나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노철래 위원** 그런데 그건 국정감사 때도,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곧 난다, 곧 매듭된다, 결과가 나올 거다’ 계속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무능하면 인사 청탁 하나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무슨 혐의가 있어 가지고 비리·불법이 있어 가지고,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무슨 뒷거래가 있어 가지고 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던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 특정인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에 대한 저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무능 내지는 국민 시각에 비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위상이 엄청나게 추락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복잡하게 꼬여 가지고 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풀어야 할 매듭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글자 그대로 ‘인사 청탁’, 아주 단순한 거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얽히고설켜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은 지금까지 3~4개월을 그런 식으로 끌어오니까 이 점을 다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국민한테 시원하게 밝혀 줘야 국민들도 ‘아,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

할을 한다' 또 '염려했던 것이 어떤 의문이 풀렸다' '그 수사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그렇게 걸렸는가 보다' 이런 것도 오해가 풀어지는데, 너무 지루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검찰이 무능하든지 진짜 국민 시선으로 볼 때나 지금 야당 위원들이 보는 대로 배후에 엄청난 무슨 비리가 깔려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추측적인 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빨리 풀어서 매듭지어 주기 위해서도 검찰이 날을 새 가면서라도 이것은 빨리 마무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풀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 '신속'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태껏 어떤든 중간 중간에 보고는 받아 보셨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검찰에서 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속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확실하게 매듭해서 의혹을 좀 풀어 주세요. 그게 검찰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노철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 하셨습니까?

또 야당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서영교 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님, 김민성 씨는 왜 기소도 안 하고 그러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하지요? 48억 교비횡령의 김민성, 48억을 횡령했고 그 돈을 쥐서 김재윤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되었고 감옥에 가 있고 두 분이 의원직 박탈당할 형을 1심에서 받았고, 김민성은 교비횡령 48억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수사 결과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맞잖아요. 김민성 맞지요, 교비횡령 48억? 그건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수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48억이 맞는데, 한두 번 질문한 것도 아니고 왜 기소를 안 하지요? 기소를 안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기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기소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기소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기소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이상한 거지요. 뒤에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누가? 김민성, 기소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뒤에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없으세요?

이런 상태니까 불공정하다는 이야기, 노철래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빨리 최경환 부총리 것도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보자들만 해결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닐까,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그 중심에 법무부장관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왜 기소를 안 하는지 한 번도 답을 제대로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답을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212항에 대해서 여야 간사 사이에 이렇게 협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12항을 의결 처리하고 그것을 우리 전체회의에 두는 것으로.

212항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 고유법안 252항부터 332항까지, 그리고 334항부터 399항까지, 이상 147건의 법률안은 법사위 1소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자리 비우는 동안에 법원행

정처장도 가시고 한민구 장관도 가시고 그랬네요, 제가 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우리 법사위의 사법시험 문제를 비롯한 법조인·법률가 양성 부분에 대해서 그 자문기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데요. 법무부하고 또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혜를, 과연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력 있는 또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어떤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전후 프로그램까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렇게 참여 좀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두 장관님 노고 많으셨고요, 두 기관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 의사일정 안건으로 추가된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다음에 최동규 특허청장님, 세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8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정청래·이개호·강창일·민홍철·우윤근·박홍근·김우남·전해철·김성곤 의원 발의)

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임내현·김우남·박홍근·이개호·김성곤·강기정·조정식·황주홍·김광진·박혜자·심재권·박남춘 의원 발의)

8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강석훈·송영근·장윤석·박명재·김윤덕·홍지만·신성범·강석호·류지영·유승우 의원 발의)

8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이철우·강석훈·이우현·이완영·김한표·정수성·이만우·김희국·한선교·전하진 의원 발의)

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

진선미·김승남·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

8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류지영·박민식·박명재·전하진·경대수·유재중·이채익·김동완·박성호·길정우·이재영 의원 발의)

89.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박영선·오제세·김광진·황주홍·정청래·인재근·김기준·전정희·민병두 의원 발의)

9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이현재·안홍준·김상훈·이진복·김한표·이정현·전하진·홍지만·정수성 의원 발의)

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7.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 · 최봉홍 · 이현재 · 김태호 · 서용교 · 권성동 · 이노근 · 이진복 · 노철래 · 이종진 · 홍영표 의원 발의)
- 10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 · 이강후 · 황인자 · 여상규 · 안홍준 · 정수성 · 홍지만 · 이채익 · 정문헌 · 길정우 · 김동철 의원 발의)
- 10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황주홍 · 이개호 · 민홍철 · 강동원 · 김윤덕 · 김우남 · 박남춘 · 이윤석 · 노영민 의원 발의)
- 1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김우남 · 이낙연 · 배기운 · 김경협 · 이찬열 · 김동철 · 양승조 · 박주선 · 임수경 의원 발의)
- 1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박민수 · 이목희 · 전순옥 · 최원식 · 장하나 · 정성호 · 김승남 · 이상직 · 정진후 · 유은혜 · 배기운 · 박남춘 · 이에리사 · 김종태 · 송호창 · 황주홍 · 전정희 의원 발의)
- 1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1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1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함진규 · 이만우 · 이현재 · 염동열 · 윤재옥 · 김상훈 · 이강후 · 전하진 · 강은희 · 김한표 · 길정우 · 홍지만

의원 발의)

- 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2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우윤근 · 주승용 · 최규성 · 이원욱 · 부좌현 · 오영식 · 박완주 · 김관영 · 이언주 · 한정애 · 윤후덕 의원 발의)
- 1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2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0.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김윤덕 · 윤관석 · 박홍근 · 최동익 · 김관영 · 이상직 · 박민수 · 이춘석 · 이학영 · 임수경 · 유성엽 · 최규성 · 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17시48분)

○위원장 이상민 83항부터 123항까지와 의사일정 제400항 법률안을 합해서 4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인증으로 전환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과 사업자 단체의 설립인가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품질경영 부분을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산업표준과 품질경영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별도로 운영되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한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 제한요건과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관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타 절차와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외국인투자 변경신고와 주식양도신고제도 등을 폐지하여 외국인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경쟁행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수거 등의 행사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6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주 전문위원, 요령 있게 요지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400항은 지난번 회의에서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부터 123항까지 산자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연구소 등을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부칙의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벌칙규정의 형량을 유사 입법례에 비하여 1.5배 수준으로 높게 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서 법률 간

법정형의 불균형을 발생시킬 소지가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92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3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협의체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을 입주 허가방식에서 입주계약 체결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신설되는 규정의 문구를 현행법의 관계 조항의 표현과 맞추어 규정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 시 수탁기업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 자구를 다듬는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능형전력망사업의 범위를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하여 규정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고 지능형전력망사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기존 지능형전력망 등록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신고사업자로 보는 경과규정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예시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23쪽의 의사일정 101항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인 안 제39조의3제5항은 가장 마지막 항으로 순서를 조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 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인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중복된 문구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그 제명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 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중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취지의 조문이 양 개정안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을 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 형태에 따라 분리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외국 투자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민원 사무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불필요하게 중복된 문구를 정리하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는 변경허가의 사유를 법률에 직접 예시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 중 각종 대행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 반복되는 자구를 정리하여 간명하게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창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창업자의 과거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재난의 발생으

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사회적 재난’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다른 법률의 정의규정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거나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첫째, 비 가리개 설치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안 제20조제5항은 시장상인이나 토지·건물 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비 가리개 설치에 찬성하는 경우 비 가리개 설치에 부동의 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에도 기둥이나 빗물받이 등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질상 일종의 공용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는 반드시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개정안에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둘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안 24조의2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조합·사업조합 및 지역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시·도지사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괄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첫째, 공제사업의 감독 대상에 관한 안 제12조제2항과 제4항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2항으로 통합하고 둘째,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 제12조제6항은 안 제12조제5항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장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제6항을 삭제하며 셋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기업의 정의를 현행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

표등록거절결정 등이 심판절차에서 취소된 경우 심판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조항 순서를 인용조문 및 심판절차의 논리적 순서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 등록료 또는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조항 순서를 인용조문 및 심판절차의 논리적 순서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를 발명진흥법에 도입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취소사유를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수정하였습니다.

35쪽, 의사일정 제121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료 및 심판청구료의 반환사유를 확대하고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명시하며 법원의 증거제출명령 대상 범위를 현행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첫째, 법원의 증거제출명령 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려는 내용은 현행 민소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인 문서보다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특칙을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자료의 기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은 현행 민소법상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따른 효과에 비하여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23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장 등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영업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83항·84항·85항·87항·88항·89항·93항·95항·97항·98항·100항·103항·105항·108항·109항·111항·116항·122항, 이상 18건은 검토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도읍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장관님, 탄소법이 2소위에서 회부되었는데 2소위에서 심사도 되지 않고 지금 기습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김도읍 위원 탄소법에 의해서 탄소 기술개발을 지원·육성하겠다, 어디에다가 지원·육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원·육성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혜 대상은 민간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수혜 대상이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 어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기업 자체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야는……

○김도읍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기업 자체를 특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탄소점유를 가지고 융·복합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대표적인 업체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구미에 있는 도레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외국인 투자기업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효성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효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리고 또 다른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화이바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김도읍 위원** 대기업을 왜 지원해 주지요? 야당은 그렇게 대기업 특혜법이니 뭐니 해 갖고 기활법이니 이런 것도 통과 안 시키면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건데 이것 지금 대기업 도와주겠다는 법 아닙니까? 이런 앞뒤 모순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활법 보십시오. 아래 본회의장에서도 뭐라 그러니까? 대기업 특혜법이니까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각 밴드별로 다 사슬처럼 엮여 있는데 사업 재편을 어떻게 대기업 빼놓고 중소기업만 합니까? 그런 이해 못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말이지, 결국 보십시오. 효성은 대기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룹으로, 재벌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왜 이런 대기업에다가 지원을 못 해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누리당이 기업활력법이고 뭐고 하면 대기업 특혜법이라서 못 한다고 막고 야당이 하면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줘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요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호가 후퇴하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활로를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뭘니까? 탄소기술 관련해서는 대기업 도와줘도 되고 부도 직전에 있는 공급 과잉된, 과잉 공급된 산업에 대해서 사업 재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기업 특혜법이라서 안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것 WTO에서 문제 삼을 여지 없습니까?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특정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WTO에서 저는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규정 자체보다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WTO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는 법률 제정 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시행하고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특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제가 저번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지가, 특수성의 소지가 없는 것인

지……

○**김도읍 위원** 장관님, 보십시오. 이 기본법 자체가 WTO 제소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들어 있는데 아무리 운용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임재주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주** 예.

○**전해철 위원** 탄소산업 육성 이것 검토보고서 다른 것 문제 전혀 없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전해철 위원** WTO 저축, 원래 전체회의에서 그것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산업위에서 WTO 특정성 요건 완화 문제나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검토해서 왔다고 했고 또 그 부분은 소관 위원회 소관사항이라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봤습니다.

○**전해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됐고요.

제가 다른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99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 대통령령이 아니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지능형전력망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규정을 하기보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 부분은 전문가 검토도 많이,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라든가 공청회를 많이 거쳐서……

○**전해철 위원** 또 이 사업이 지금 신고제로 완화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전해철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제도화될 때까지는 등록제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있던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신고제를 하는 게 좋겠으나 등록이든 신고든 어떤 형태든 절차는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신고가 좀 더 기업에 자유로운 지능형전력망……

○**전해철 위원** 아무튼 산자부장관님은 소관 상

임위, 이제 임기 다 끝나셨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아닙니다. 아직 기활법 남아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전해철 위원** 아무튼 해당 상임위에서의 의견과 이 자리에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위원장님, 99항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우려가 있어서 2소위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99항이요?

○**전해철 위원** 예.

그다음에 102항의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관님, 이걸 지금 인증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게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민간인증으로 바뀝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우대조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민간인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 정부인증 이런 것보다는 민간인증 자체가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와 결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인증체제는……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계속 있더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인증이 되었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인증체제는 이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필요하면 자기가 받는 것으로 해야 되지 이 자체가, 받는 것 자체가 경쟁적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그 제도가 자유로운 활동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 우려도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님, 102항에 대해서도 2소위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102항이요?

○**전해철 위원** 예.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잠깐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증으로 전환하되 기업의 자발적인 생산성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해철 위원** 앞으로 잘 설명을 하시도록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특허청장님, 121항입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저는 전문위원이 상당히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고 보거든요. 증거제출명령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증거제출명령에 위반했을 때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이런 것은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상당히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특허청장 최동규**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121항은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전해철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상민** 예.

○**전해철 위원** 91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주** 예.

○**전해철 위원** 이게 지금 형량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다른 유사 법률보다 형량이 1.5배 이상 높고 또 하한선을 정해 났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철 위원** 실제 우리 2소위에서 이런 것 몇 개를 수정하고 했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91항에 대해서도 형벌체계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2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전문위원, 이건 2소위에서 논의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는 의견이 아니고 우리 형사법체계 양형과 일응 일정 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위원장 이상민**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도록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전문위원이 법사위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 가지고 문제 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께서 제가 왜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몇 항이요?

○김도읍 위원 91항 말입니다. 법사위가 아주 민주적입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이유가 이겁니다. 형을 가중하자는 것입니다. 위낙에 저희 핵심기술이…… 요즘도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이런 것, 그래서 저는 형을 가중해 가지고 일반예방효과를 누리고 나중에 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재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예방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법률가로서 다른 법률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예방적 효과를 가하기 위해서 더 법정형을 높이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그런 것은 과하다 싶어서 이 정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이한성 위원 탄소산업 진흥법 이게 전문위원은 산자위에서 검토할 때 별 문제점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장관님 답변은 WTO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래서 제가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특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이한성 위원 사실 경쟁업체가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도레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도레이, 일본……

○이한성 위원 도레이산업이, 이름이 도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한국도레이입니다.

○이한성 위원 도레이인데 한국도레이 또 도레이새한인가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새한은 아니고 도레이입니다.

○이한성 위원 도레이입니까? 한국도레이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어쨌든 일본에 있는 도레이가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이한성 위원 한 40년 외길을 걸어 가지고 탄소섬유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고급탄소섬유 분야에서는 거의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하고 몇 군데가 세계 탄소섬유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탄소섬유업체가, 도레이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 상당히 엄격하게 감시하지 않을까, 예민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산자부에서는 기업을 너무 보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 신기후체제에서 37%, BAU 기준으로 37%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 현재보다 훨씬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경제성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37% 중에서 11.7%인가는 또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그것을 벌충하겠다는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수입을 할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결국 국민 혈세다, 그런 마당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이에 기술발전을 엄청나게 해 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한 300개 기업이, 대기업들이 아주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업계의 아우성을 못 이겨 가지고 37%를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국제무대에서 대단한 웃음거리를 샀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위기로 그린라운드도 형성된다면 앞으로 한국 제품을 사겠느냐, 이게 코펜하겐에서 큰 소리 쳐 놓고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기업체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런 안을 내놓고 웃음거리를 사고, 오바마 대통령도 걱정을 했고 현장에서도 많은 웃음거리를 샀고, 이게 산자부장관님이 제대로 정책을 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3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하고 유명한데 미국의 AES, 주로 ESS 업체에 납품을 했다는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제조하는 것, 배터리 제조하고 반도체 제조만 하지 반도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잘 안 돼 가지고 애플이 다 차지하고 있고 지금 배터리도 만들었으면 바로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 그리드는 안 돼 가지고 그냥 배터리만 팔아먹고 있어 가지고 외국 업체가 다 장악하고 이런 게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단순제조는 잘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발전이 안 되는 것, 이게 지금 큰일이고 기업체도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 3%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채워 나가려고 그러니까? 정말 참 한심스럽고 대단히, 국민들이 모르는 문제를 산업부에서 쉬쉬 숨기면서 기업체 염살에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탄소 소재는 물론 에너지를,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각국이 차세대 소재로서 경쟁을, 각축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정성이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R&D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원천기술이 아니고, 즉 응용기술일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기후변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신산업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지금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파수 조정용 ESS 1GW LG화학이 수주한 것도 한전에서 그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트랙 레코드가 있고 그걸 가지고 수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자체는 에너지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토도 작고 숲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풍력도 바다의…… 그러나 ESS와 연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에너지자립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고 있으니까……

○이한성 위원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독일 수치 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독일은……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요금을 많이 올리면,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가 상대가격이 나아지면 할 겁니다.

○이한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에 전기값이 우리나라의 3배가 비싸요. 그리고 독일도 신재생에너지 쓰는 바람에 2배가 비싸요. 우리는 기업체에 그렇게 전기값 싸게 해 줍니다. 그래도 지금 규제가 높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조선일보 칼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올해 우리나라 기업이 한 게 뭐 있냐, 내수시장 찾아 가지고 잘 살고 그냥 안주했다고.

이런 것 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읽었습니다.

○이한성 위원 앞으로 이런 걸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노철래 위원님, 현안질의인가요 아니면 법률안 관련된 건가요?

○노철래 위원 아니요, 법안 질의입니다.

114항 전통시장, 상가 육성에 관해서 한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비 가리개 설치 특례조항인데 자기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비 가리개 하는 걸 기둥을 세운다거나 도로변으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건데, 물론 건축물의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편의를 봐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혹시 화재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고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이게 기재부에서는 혹시 동의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화재보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자는 법안이 몇 번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그런 예가 없어 가지고 공제조합 쪽으로 지금 저

회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제조합에 운영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화재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또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연한 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면 되는데 전통시장은 화재를 잘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철래 위원** 글썄, 전통시장이 대부분 영세상인이라서 본인들이 화재보험을 든다거나 그런 게 좀 취약하지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지금 운영비 지원은 이미 예산을 일부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자금을 초기에 재정 지원하는 것은 아직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예가 없기 때문에.

○**노철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이상민** 몇 번인가요?

○**노철래 위원** 114번입니다, 114항.

○**위원장 이상민** 그러시지요.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법률안입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83항·84항·85항·87·88·89·93·95·97·98·100·103, 다음에 105·108·109·111·116·122, 각 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법률안들입니다.

86·90·92·94·96·101·104·106·107·110·112·113·115·117·118·119·120·123·400항의 각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건입니다. 91·99·102·114·121, 맞지요?

각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조정을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법사위의 원칙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기 윤 장관님도 출석하셨지만 황우여 부총리나 정종섭 장관 다 하셨는데 기획재정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경환 장관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왔는데, 송언석 차관이 아침부터 지난번에도 계속 하면서 급한 것 3개만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또 외면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3건만 좀 상정해서……

○**전해철 위원** 지금 가는데요, 다음에 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그래도 급한 건데 기왕 한 것……

○**위원장 이상민** 3건 기다리시는데 3건만 잠깐만……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원칙도 좀 안 맞고.

○**노철래 위원** 그래요, 급한 건 처리합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원칙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지금 2소위에 있는 것 심사도 안 하고 올리고 있는 이런 판에 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전해철 위원** 아니, 저는 반대예요. 위원장님 원칙을 지키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전해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 가는 것을 겨우 뭐 했는데……

○**위원장 이상민** 또 이렇게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허비되니까, 3건이 급하다고 하니까.

○**전해철 위원** 그러면 다른 기재부 건은 뭐예요?

○**이한성 위원** 일몰법 이런 게 있으니까 3건만 합시다.

○**노철래 위원** 그래, 그것만 하십시오.

○**임내현 위원** 제일 기다린 내가 양해를 해 줄테니까 얼른 합시다.

○**전해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임내현 위원** 양해해 준다고.

○김도읍 위원 탄소법 이런 것 해 주고 나면 이렇다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김도읍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전해철 위원 김도읍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노철래 위원 이려고 있을 시간이면 다 하겠네.

○전해철 위원 원칙을……

○정갑윤 위원 탄소법 그것은 원칙대로 했나? 잠깐만 하면 되잖아, 3건 하는 건데.

○위원장 이상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전해철 위원 안 하지요, 좋게 말을 안 하면 안 맞는 거지요, 지금.

다른 부처 장관들 오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 뭐하러 오라 했어요?

○정갑윤 위원 원칙대로 하면 탄소법도 안 했잖아요.

○전해철 위원 왜 지금 탄소법이 나와요, 여기서.

○위원장 이상민 세 분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도읍 위원 무슨 법안 통과하는 걸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서로 간에 법사위 우리 가족인데……

○서영교 위원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김도읍 위원 조용히 하세요. 남이야 부드럽게 하든 뭘……

○서영교 위원 남이라니요, 여야가 있는데. 부드럽게 하세요.

○김도읍 위원 내가 부드럽게 하고 말고……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노철래 위원 전 간사, 좀 양해해 주세요.

○전해철 위원 좋아요. 앞으로 원칙을 지켜서 합시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앞으로는 일절 없는데 송언석 차관이 지난번부터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그런 정에 하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최경환 장관님 왜 안 오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래도 오셔야지요.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지,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성린 의원 대표발의)(나성린·이만우·이한성·박명재·김광림·유일호·강석호·이현재·주영순·서용교·강길부 의원 발의)

2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3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8시30분)

○위원장 이상민 214항·221·231항,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것 정부안 아닙니까? 의원입법 발의예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간략히 해 주세요.

배포했으니까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체계·자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4·221·231, 세 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임내현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이한성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노철래 위원님, 일곱 분이 끝까지 계셨습니다. 저까지 해서 9명이지요.

○우윤근 위원 제 이름도 잘 불렀어요?

○위원장 이상민 예, 우윤근 대표까지도 다 말씀드렸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도읍	김재경	김진태	노철래
박지원	서영교	우윤근	이상민
이한성	임내현	전해철	정갑윤
홍일표			

○청가 위원(1인)

21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나

서 기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남	궁	석
전 문 위 원	임	재	주
전 문 위 원	강	남	일
전 문 위 원	심	태	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	언	석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	우	여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국 방 부 장 관	한	민	구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	종	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	중	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	상	직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	진	엽
환 경 부 장 관	윤	성	규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국 민 안 전 처 장 관	박	인	용
인 사 혁 신 처 장	이	근	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	승	희
조 달 청 장	김	상	규
통 계 청 장	유	경	준
경 찰 청 장	강	신	명
문 화 재 청 장	나	선	화
중 소 기 업 청 장	한	정	화
특 허 청 장	최	동	규
감 사 원 장	황	찬	현

○법원측 참석자

법 원 행 정 처 장	박	병	대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용	희
---------	---	---	---